

**KOTRA**자료 20-114 **REPUBLIC OF AFGHANISTAN ALBANIA** REPUBLIC OF ALBANIA **ALGERI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ANDORRA** PRINCIPALITY OF ANDORRA **ANGOLA** REPUBLIC OF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GENTINE REPUBLIC **ARMENIA** REPUBLIC OF ARMENIA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IA**  
 REPUBLIC OF AUSTRIA **AZERBAIJAN** REPUBLIC OF AZERBAIJAN **BAHAMAS,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  
**BAHRAIN** KINGDOM OF BAHRAIN **BANGLADESH**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BARBADOS** BELARUS REPUBLIC OF  
 BELARUS **BELGIUM** KINGDOM OF BELGIUM **BELIZE** **BENIN** REPUBLIC OF BENIN **BHUTAN** KINGDOM OF BHUTA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REPUBLIC OF BOTSWANA **BRAZIL**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BRUNEI** NATION OF BRUNEI, THE ABODE OF PEACE **BULGARIA** REPUBLIC OF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REPUBLIC OF BURUNDI **CAMBODIA** KINGDOM OF CAMBODIA **CAMEROON** REPUBLIC OF CAMEROON **CANADA**  
**CAPE VERDE** REPUBLIC OF CABO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REPUBLIC OF CHAD **CHILE** REPUBLIC OF  
 CHILE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COLOMBIA** REPUBLIC OF COLOMBIA **COMOROS** UNION OF THE COMOROS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STA RICA** REPUBLIC OF COSTA RICA **CROATIA** REPUBLIC OF CROATIA **CUBA**  
 REPUBLIC OF CUBA **CYPRUS** REPUBLIC OF CYPRUS **DJIBOUTI** REPUBLIC OF DJIBOUTI **CZECH REPUBLIC** **DENMARK**  
 KINGDOM OF DENMARK **DOMINICA** COMMONWEALTH OF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ECUADOR** REPUBLIC OF ECUADOR **EGYPT** ARAB REPUBLIC OF EGYPT **EL SALVADOR** REPUBLIC  
 OF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ERITREA** STATE OF ERITREA **ESTONIA** REPUBLIC  
 OF ESTONIA **ESWATINI** KINGDOM OF ESWATINI **ETHIOPIA**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IJI** REPUBLIC OF  
 FIJI **FINLAND** REPUBLIC OF FINLAND **FRANCE** FRENCH REPUBLIC **GABON** GABONESE REPUBLIC **GAMBIA, THE** REPUBLIC OF  
 THE GAMBIA **GEORGIA** **GERMANY**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HANA** REPUBLIC OF GHANA **GREECE** HELLENIC  
 REPUBLIC **GRENADA** **GUATEMALA** REPUBLIC OF GUATEMALA **GUINEA** REPUBLIC OF GUINEA **GUINEA-BISSAU** REPUBLIC OF  
 GUINEA-BISSAU **GUYANA**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HAITI** REPUBLIC OF HAITI **HONDURAS** REPUBLIC OF HONDU-  
 RAS **HUNGARY** **ICELAND** **INDIA** REPUBLIC OF INDIA **INDONES**  
**IRAQ** REPUBLIC OF IRAQ **IRELAND** **ISRAEL** STATE OF ISRAEL **IVOIRE** **JAMAICA** **JAPAN** **JORDAN** HASHEMITE KINGDOM OF  
 REPUBLIC OF KENYA **KIRIBATI** REPUBLIC OF KIRIBATI **KOREA, I**  
**SOUTH** REPUBLIC OF KOREA **KUWAIT** STATE OF KUWAIT **KYRG'**  
 REPUBLIC **LATVIA** REPUBLIC OF LATVIA **LEBANON** LEBANESE R  
 LIC OF LIBERIA **LIBYA** STATE OF LIBYA **LIECHTENSTEIN** PRINCI  
 NIA **LUXEMBOURG** GRAND DUCHY OF LUXEMBOURG **MADAGASCAR** REPUBLIC OF MADAGASCAR **MALAWI** REPUBLIC OF  
 MALAWI **MALAYSIA** **MALDIVES** REPUBLIC OF MALDIVES **MALI** REPUBLIC OF MALI **MALTA** REPUBLIC OF MALTA **MARSHALL**  
**ISLANDS**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MAURITANIA**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MAURITIUS** REPUBLIC OF  
 MAURITIUS **MEXICO** UNITED MEXICAN STATE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MOLDOVA** REPUBLIC OF MOLDOVA  
**MONACO** PRINCIPALITY OF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KINGDOM OF MOROCCO **MOZAMBIQUE**  
 REPUBLIC OF MOZAMBIQUE **MYANMAR**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NAMIBIA** REPUBLIC OF NAMIBIA **NAURU**  
 REPUBLIC OF NAURU **NEPAL**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NETHERLANDS** KINGDOM OF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REPUBLIC OF NICARAGUA **NIGER** REPUBLIC OF NIGER **NIGERIA** FEDERAL REPUBLIC OF NIGERIA  
**NORTH MACEDONIA** REPUBLIC OF NORTH MACEDONIA **NORWAY** KINGDOM OF NORWAY **OMAN** SULTANATE OF OMAN **PAKI-**  
**STAN**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PALAU** REPUBLIC OF PALAU **PALESTINE** STATE OF PALESTINE **PANAMA** REPUBLIC OF  
 PANAMA **PAPUA NEW GUINEA**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PARAGUAY** REPUBLIC OF PARAGUAY **PERU**  
 REPUBLIC OF PERU **PHILIPPINE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POLAND **PORTUGAL** PORTUGUESE  
 REPUBLIC **QATAR** STATE OF QATAR **ROMANIA** **RUSSIA** RUSSIAN FEDERATION **RWANDA** REPUBLIC OF RWANDA **SAINT KITTS**  
**AND NEVIS** FEDERATION OF SAINT CHRISTOPHER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INDEPENDENT STATE OF SAMOA **SAN MARINO** REPUBLIC OF SAN MARINO **SÃO TOMÉ AND PRÍNCIPE** DEMOCRATIC REPUBLIC  
 OF SÃO TOMÉ AND PRÍNCIPE **SAUDI ARABIA** KINGDOM OF SAUDI ARABIA **SENEGAL** REPUBLIC OF SENEGAL **SERBIA** REPUBLIC  
 OF SERBIA **SEYCHELLES** REPUBLIC OF SEYCHELLES **SIERRA LEONE** REPUBLIC OF SIERRA LEONE **SINGAPORE** REPUBLIC OF  
 SINGAPORE **SLOVAKIA** SLOVAK REPUBLIC **SLOVENIA** REPUBLIC OF SLOVENIA **SOLOMON ISLANDS** **SOMALIA** FEDERAL  
 REPUBLIC OF SOMALIA **SOUTH AFRICA** REPUBLIC OF SOUTH AFRICA **SOUTH SUDAN** REPUBLIC OF SOUTH SUDAN **SPAIN**  
 KINGDOM OF SPAIN **SRI LANKA**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SUDAN** REPUBLIC OF THE SUDAN **SURINA-**  
**ME** REPUBLIC OF SURINAME **SWEDEN** KINGDOM OF SWEDEN **SWITZERLAND** SWISS CONFEDERATION **SYRI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REPUBLIC OF TAJIKISTAN **TANZAN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HAILAND** KINGDOM OF  
 THAILAND **TOGO** TOGOLESE REPUBLIC **TONGA** KINGDOM OF TONGA **TRINIDAD AND TOBAGO**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TUNISIA** REPUBLIC OF TUNISIA **TURKEY** REPUBLIC OF TURKEY **TURKMENISTAN** REPUBLIC OF TURKMENISTAN  
**TUVALU** **UGANDA** REPUBLIC OF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UZBEKISTAN** REPUBLIC OF UZBEKISTAN **VANUATU** REPUBLIC OF VANUATU **VATICAN CITY** VATICAN CITY STATE

## 외국인 투자 가이드



# BUSINESS in KOREA



# MINISTER MESSAG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사 성 윤 모

## MINISTER MESSAGE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금은 한국 수출의 19%, 일자리의 7%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한국정부는 국내 경제발전의 동반자로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투자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투자처로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탄탄한 경제여건과 매력적인 투자환경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한국을 6년 연속으로 기업환경이 좋은 세계 Top 5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의 77%와 연결되는 FTA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신기술과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수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뛰어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변화 대응과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 임대료 감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자발급 간소화, 외국인학교 건립 등 외국투자자의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여러분들이 최적의 투자처로서 한국을 선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KOTRA 사장  
박사 권 평 오

# CEO MESSAGE

## CEO MESSAGE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시고, 장차 투자를 하실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고 성공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경기 둔화, 지역주의 확산, 통상분쟁 확대 등으로 글로벌 투자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액 220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5년 연속으로 200억불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외국기업인들께서 대한민국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하고 6년 연속 블룸버그 국가혁신지수 1위인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코트라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규제개선,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와 함께 FTA로 연결된 세계 3위 경제영토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외국인투자 가이드 2020」은 제작과정에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외국인투자가의 관점에서 투자 단계별 핵심내용, 상세자료, FAQ 등을 제공하고 각종 통계와 도표를 통해 간결하면서도 풍부함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간되는 「외국인투자 가이드 2020」이 외국인투자자들이 가까이 두고 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친근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OTRA 사장

권 경 오

## CORPORATE BUSINESS

- 
- Attractiveness 대한민국 투자환경 매력도**  
10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정책  
14 대한민국 시장의 강점

- 
- Starting 투자의 시작**  
036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  
043 기업형태  
047 입지선정  
064 투자실행 (법인설립, 증자, 기존주 취득, 장기차관)  
079 비자 · 체류

- 
- Advantages 투자인센티브**  
092 조세감면  
108 입지지원  
117 현금지원  
125 R&D센터 특례  
134 경영지원(인큐베이팅, 교육훈련, 채용, 출입국)

- 
- Practice 사업운영 및 실천**  
140 조세제도  
157 통관 및 자본재 도입  
165 인사 · 노무  
179 지식재산권  
19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196 해산 및 청산

# CONTENTS



**INDIVIDUAL  
BUSINESS**

- 200 개인사업자
- 211 부동산 취득

**APPENDIX**

- 218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 220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 222 [별표3] 입지별 특성
- 224 [별표4] 지방세 세율
- 226 [별표5] 수탁기관
- 229 [별표6] 법무법인
- 238 [별표7] 회계법인





# CORPORATE BUSINESS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한국경제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2019년 3월 28일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대통령 모두말씀 중에서-

# ATTRACTIVENESS

대한민국 투자환경의 매력도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정책

대한민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자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정책은 OECD, UNCTAD 및 WTO 등의 국제적 권고와 합의사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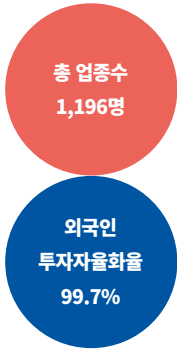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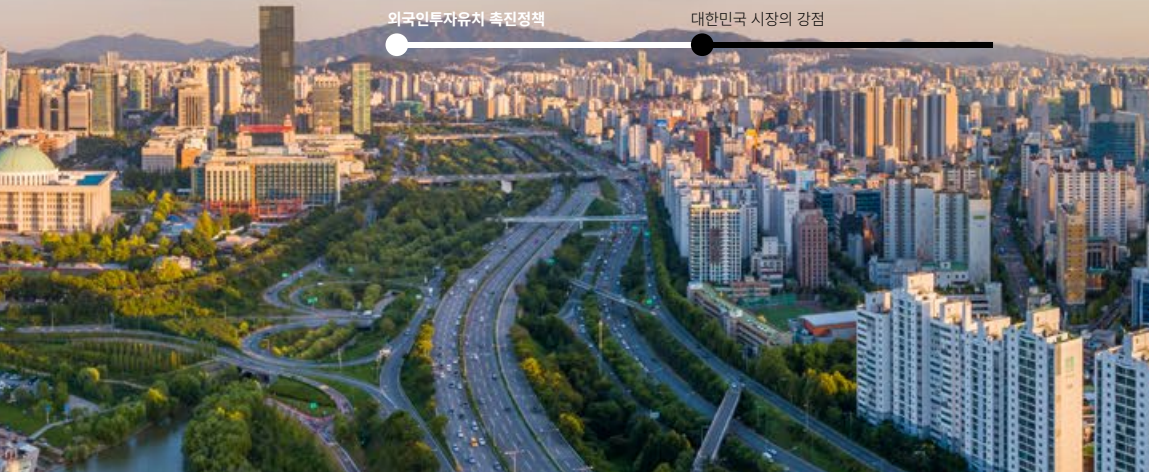
### 투자자유화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자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투자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다.

☞ 외국인투자 자유화율 : 99.7% (투자대상 업종 대비 미개방업종을 제외한 업종 수 비율)



투자대상업종

(단위:개)

소계	제한있음(지분율 등)		제한없음 (자유화)
	미개방	제한업종	
1,135	3	26	1,106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투자자 보호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2. 내국인 대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외국인투자 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④항

#### 4.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 동법 제30조제①항

## 투자 인센티브

### 1. 외국인투자자의 역할

외국인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자본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의 동참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 효과와 이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 및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허브화를 촉진하며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등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 2. 투자 인센티브

대한민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 In Detail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정책 개편 및 개편 예정 내용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용 친화기업을 우대하며, 지역본부 등 글로벌 허브 외국인투자기업 및 R&D 센터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에 대하여 그 대상을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1.22]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본이익잉여금으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특소위에 상정돼 계류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9.25]

\*관련 법령 변경 시, 비자 심사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3. 외국인투자인센티브 주요 내용

#### ① 조세감면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 ② 현금지원

외국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사업 혹은 소재·부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혹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시설설치를 수반하는 투자를 할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 ③ 입지지원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 ④ 기타지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며 임대 시 임대료 감면의 혜택이 있다.

**대한민국**은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2014년부터 6년 연속 세계최고수준인 5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지수에서도 세계 4위(2018)로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P, Fitch)에서 모두 중국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Moody's에서는 Aa2 등급, S&P에서는 AA 등급을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2019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이며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우수한 인력풀, GDP 대비 높은 R&D 비중 등을 기반으로 혁신산업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IT기기, 패션, 영화, K-POP 등을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시킨 우수한 기업과 선택에 까다로운 소비자들로 인해 글로벌 테스트 베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고, 세계 5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들은 세계 3위의 거대한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 5위 규모의 전자상거래시장과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5천만 명의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14위의 내수시장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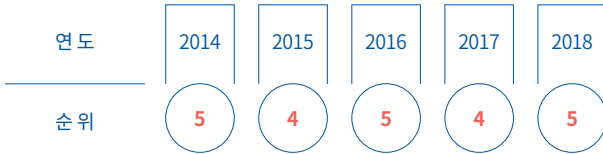
# 대한민국 시장의 강점

## 일반사항

###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연속 세계 5위권 내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1998년 특별법 성격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관련 대한민국의 세계 순위



출처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Report"

### 2. 경제자유지수

국가가 개인과 기업이 각종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2019년)’에서 대한민국은 180여 개 국가 중 29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많은 선진국들보다 높은 순위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부항목 중 기업자유도에서 4위를 기록하여 기업 운영에 자율성을 매우 높게 보장해주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 2019년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순위, 평가대상 180개국



출처 : The Heritage Foundation(January 2019)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



### 3. 경제지표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국가이다. 아울러 외환보유고도 4,037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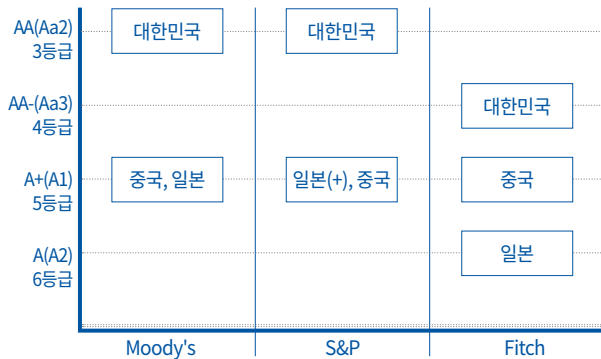
#### 주요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GDP(십억US)	1,411	1,383	1,415	1,531	1,619
1인당 GDP (US)	27,805	27,097	27,607	29,744	31,370
무역(십억US)	1,098	963	902	1,052	1,140
외환보유고(십억US)	363.6	367.9	371.1	389.3	403.7

### 4. 국가신용등급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에서 AA, Moody's에서 Aa2의 투자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영국, 프랑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았으며, Fitch에서는 대만, 벨기에와 같은 수준인 AA-로 평가받았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2019년 상반기에 검증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일본과 중국보다 높아 동북아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 한·중·일 국가신용등급 비교 (2019.6월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 ( )는 Moody's 산정 등급임

## 혁신역량

대한민국은 2019년 블룸버그가 발표한 혁신지수 평가에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선정되었다. 2014년 이후 6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R&D 집중도 2위, 제조업 부가가치 2위, 첨단기술 집중도 4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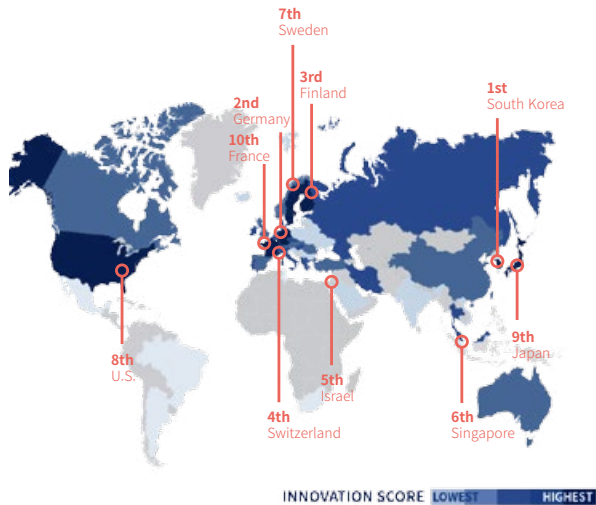
### 2019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단위: 순위)

2019 순위	국가	점수	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 기술 집중도	서비스 산업 효율	연구자 집중도	특허 출원 (활동)
1	대한민국	87.38	2	2	18	4	7	7	20
2	독일	87.30	7	3	24	3	14	11	7
3	핀란드	85.57	9	16	5	13	9	8	5
4	스위스	85.49	3	4	7	8	13	3	27

출처: Bloomberg (2019.1.22.)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2019 Bloomberg Innovation Index)



### 1. 글로벌 테스트 베드

대한민국은 다양한 산업의 제조업 경쟁력과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 세대에 걸쳐 첨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어 있다. 제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연구개발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제조업과 연구개발의 시너지로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신제품에 대한 선호 및 글로벌 유행에 민감한 소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대한민국에서 통해야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테스트 베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주요국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중국	한국 4.55%
미국	이스라엘 4.25%
독일	일본 3.14%
일본	독일 2.93%
<b>한국</b>	미국 2.74%
영국	프랑스 2.25%
대만	중국 2.11%
멕시코	영국 1.69%

출처 :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 결과” (2018.11.27.)

### 2. 디지털 인프라

초고속,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이 특징인 5G가 대한민국에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초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은 5G의 상용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간 기술과 서비스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외국투자자에게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글로벌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새로운 혁신선도사업과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 N. A. : Data, Network, AI)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산업과 서비스간 융합을 통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혁신을 통해 당면한 한계를 극복해가는 성공 DNA가 대한민국 곳곳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다양하고 폭넓은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인공지능(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연계하여 5G로 전 산업과 서비스에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2019년 10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은 평가대상 141개국 중 종합 1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ICT 보급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WEF는 동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ICT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였다.

**20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ICT 보급(ICT Adoption)**

구분	1	2	3	4	5	6	7	8
국가	대한민국	UAE	홍콩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아이슬란드	카타르
평점	93	92	89	88	87	86	85	84

출처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2019.10)

**3. 우수한 인적 자원**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교육열과 매우 높은 수준의 대학 진학을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있다.

- 201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25~34세의 대학졸업 비율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번째로 높은 캐나다(61%)나 OECD 평균(43%)에 비해 큰 차이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2018년 10월 세계은행에서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적자본지수의 경우,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오늘 태어난 아이의 미래 생산성을 측정한 지수로서 아이가 완전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았을 때 값이 1이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0.84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대학교육 수준비교 : 25~34세 대학졸업 비율** (단위: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7"

**인적자본지수**



출처 : 세계은행, IMF "세계인적자본지수 2018"

현재 2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이며, 이들은 북미,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 또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해외어학연수 또는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경험을 쌓기 때문에 각자의 전공뿐 아니라 영어와 제2외국어 역량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K-pop 열풍뿐 아니라 대한민국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력 수요가 급격히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국민성을 지닌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한국인들 특유의 근면 성실함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공사례가 공유되며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다.

## 주력산업

주력산업이란 핵심산업(Key Industry), 선도산업(Leading Industry), 수요 창출산업(Demand Pull Industry) 등으로 불리는데 공통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구조, 산업생산, 부가가치 등이 우수한 위치에 있어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산업이다. 전·후방 연계효과가 크며, 산업의 질적 수준이 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군집의 구성산업 가운데 중요도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은 수출과 제조업이라는 양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석유정제, 섬유, 패션의류, 자동차, IoT가전, 철강, 로봇, 통신기기 산업 등이 있다.

### 1. 디스플레이 산업

디스플레이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중국, 대만, 일본 등의 4개국만이 생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04년 이후 세계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은 42.6%이며, 수출액은 24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LCD 패널은 약 29.2%, OLED 패널은 94.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2018년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대한민국	대만	일본	중국	기타
전체	42.6%	19.1%	12.0%	29.1%	1.3%
LCD 패널	29.2%	23.7%	15.0%	30.6%	1.5%
OLED 패널	94.4%	1.2%	0.7%	3.7%	0.1%

### 2. 반도체 산업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21.5%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20.9%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위로 약 62%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D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비중

(단위: 억 달러)

	2015	2016	2017	2018
총수출	5,268	4,954	5,737	6,055
반도체 수출	629	622	979	1,267
반도체 비중(%)	(11.9)	(12.6)	(17.1)	(20.9)

## 3. 조선산업

대한민국의 조선분야는 1970년대 대형 조선소 건설을 시작으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 2000년대 전반에는 세계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 성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 조선해운 시장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 등 여러 악재가 작용하였으나 2018년 7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의 연간 수주량을 기록했다.

현재 2020년 황산화물 배출 규제 발효, CO<sub>2</sub> 규제 강화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고효율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초 LNG연료 추진선의 발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선박을 수주하며 높은 기술력과 수주경쟁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고효율 선박 관련 기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조선-해운-금융간 상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국가별 선박 수주 및 건조량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CGT, %)

		대한민국	중국	일본	유럽	기타	합계
수주	물량	13.1	10.0	5.3	3.0	0.4	31.8
	수주비중	41.2	31.4	16.7	9.4	1.3	100
건조	물량	7.7	11.1	7.6	2.1	2.1	30.6
	건조비중	25.2	36.3	24.8	6.9	6.9	100

#### 4.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국가 생산,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력산업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효율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업계는 2018년 12월 NCC(납사 분해 시설) 등 석유화학설비 신증설을 위해 총 14.5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설비투자도 지속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에틸렌 생산능력, 2018) : 4위

국가	미국	중국	사우디	대한민국	이란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점유율(%)	19.1	14.4	9.9	5.2	4.3	4.2	3.7	3.2	3.0

출처 : 한국석유화학협회

#### 5. 석유정제산업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하루 3,346천 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5위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위 공장당 정제시설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정제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012년 석유제품 수출액은 562억 달러를 달성하여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8년 수출액은 467억 달러로 수출품목 4위를 기록했다.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석유제품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국별 석유정제능력 2018년 기준 (단위 : 천 배럴/일)

	1	2	3	4	5	6	7	8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대한민국	일본	사우디	브라질
정제 능력	18,762	15,655	6,596	4,972	3,346	3,343	2,835	2,285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6)



## 6. 섬유산업

대한민국의 섬유는 전 공정에 걸쳐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기술도 고르게 발달되어 있어 제품 다양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의 섬유패션 수출국이며, 특히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저융점섬유(LMF; Low Melt Fiber) 등 일부 고부가가치제품은 세계 최고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 세계 섬유 수출시장 점유율

2017년 기준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국가	중국	EU	인도	베트남	방글라 데시	터키	미국	파키 스탄	인니	<b>대한 민국</b>
점유율	38.7	26.5	4.8	4.7	4.1	3.5	2.6	1.8	1.6	<b>1.6</b>

출처: WTO

## 7. 패션의류산업

2017년 기준 글로벌 패션의류 및 신발시장은 1조 1천억 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43억 달러(신발 제외)로 세계 12위의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한류'는 하나의 문화로 소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드라마 및 예능을 통해 노출된 대한민국의 최신 트렌드나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K-Fashion의 중심지이자, 패스트 패션(유행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바로바로 반영되어 빨리 바뀌는 패션)의 시초인 동대문 패션시장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등 IT기술을 결합한 소비자 반응형 개인맞춤의류 등 다양한 동대문 스타트업(동타트업)이 출현하면서 패션의류산업의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세계 패션의류(신발제외) 시장규모

2017년 기준 (단위:억달러)

	1	2	3	4	5	6		12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	<b>대한 민국</b>
판매액	2,844	2,675	662	633	551	502		<b>243</b>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

### 8. 자동차 산업

대한민국은 독자모델을 보유한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자동차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2%를 차지하는(2016년 기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며, 2016년 자동차 부문의 무역 흑자는 497억 달러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미래자동차 분야인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개발 등 자동차 산업의 파괴적 혁신 과정에서 완성차사, IT, 통신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커넥티드 서비스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자동차 분야 스마트공장을 2,000개 구축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고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발전, 안전규제, 기술혁신, 통상, 노사 등 다방면의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생산 2017년 기준 (단위 : 백만 대)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b>대한민국</b>	멕시코	스페인
생산량	29.0	11.2	9.7	6.1	4.8	<b>4.1</b>	4.1	2.8

### 9. IoT 가전산업

IoT 가전은 가전제조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홈넷사,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홈 산업생태계의 핵심제품으로 다양한 이종 플랫폼과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에서 2017년 기준 아시아 지역은 26%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 중 대한민국은 25%로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스마트홈 시장은 연평균 11.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96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홈 시장의 아시아 국가별 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중국	<b>대한민국</b>	일본	호주	기타
2017	4.28	<b>4.16</b>	4.12	2.01	2.15
2023	12.97	<b>9.65</b>	8.18	4.24	5.37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스마트홈 시장(연구개발특구기술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2017.9))

## 10. 철강산업

대한민국의 철강은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조강생산량 100만 톤을 돌파한 이래, 지속적인 설비 확충과 수요증가로 2018년 72.5백만 톤을 생산하며 세계 5위의 철강생산국으로의 위치를 지켰다. 세계 조강생산 중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0.1%에서 2018년 4%로 증가했으며 대한민국의 1인당 철강 소비량은 2018년 기준 1,047 kg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범용강재의 대량생산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세계 철강 공급 증가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 제품의 경쟁력강화 및 고급화를 이루고 있다.

국가별 조강 생산량 2018년 기준 (단위 : Mt, %)

순위	1	2	3	4	5	6
국가	중국	인도	일본	미국	대한민국	러시아
생산량	928	107	104	87	72.5	71.7
점유율	51.3	5.9	5.8	4.8	4.0	4.0

국가별 1인당 철강 소비량 2018년 기준 : 세계 1위 (단위 : kg)

국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소비량/인	1,047	590	514	307

출처 : 한국철강협회,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 11. 로봇산업

로봇분야는 융합화, 스마트화, AI 기술 발달 등을 이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의 대표 산업 중 하나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제조업용 로봇시장의 규모는 951백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용 로봇 세계시장 규모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영국	기타	합계
규모	5,419	2,508	1,759	1,553	951	104	4,208	16,502
점유율	32.8	15.2	10.7	9.4	5.8	0.6	25.5	100

출처 : 2019 World Robotics(IFR, 2019.9)

## 12. 통신기기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장비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373억 달러 수준이나,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해 급격한 장비 수요 증가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 회사인 IHS 마킷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기기 제조기업인 삼성전자의 5G 장비시장 점유율이 21%로 집계되어 17%를 점유한 중국의 화웨이를 앞섰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칩, 단말기, 장비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특히 고주파(mmWave) 분야 장비 경쟁력이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5G 장비 점유율

2018년 4분기

기업명	에릭슨	삼성	노키아	화웨이
점유율	24%	21%	20%	17%

## In Detail

### 5G 시장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강점

- 통신 모뎀, 단말기, 장비까지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존재로 인해, 동반 해외진출 및 성장 모색 가능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최신 통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속도·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내수 시장의 경우, 판매 이후 사후지원에 있어 해외 업체보다 빠른 대응과 적극 대처 가능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슈분석 125호] 5G 시대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전략 방향, 2019



## 시장

### 1. 내수시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 140개국 중 14위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인구는 5,171만 명, 국내총생산(GDP)은 1조 7천2백억 달러에 이른다. 이를 환산했을 때 1인당 GDP는 3만 3,346달러(세계 26위)에 달한다. 한편, 온라인마케팅,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소매거래가 활발하여 대한민국은 소매부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결제 수단도 현금 및 수표의 거래보다는 신용카드가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NFC기술,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간편 결제(smart pay)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간편 결제 이용건수는 2018년에 23억 8천만 건으로 전년대비 69% 상승하였다.

### 국가별 내수시장 규모 순위

순위	1	2	3	...	14	15	16
국가	중국	미국	인도	...	<b>대한민국</b>	캐나다	스페인

출처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 2. 전자상거래

대한민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마켓을 보유하고 소매전자상거래 판매규모에서 세계 톱 5 안에 진입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켓터(e-Marketer)는 2019년도에도 대한민국이 동 분야에서 변함없이 순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전자상거래 상품은 여행 및 교통, 가전전자, 통신기기, 의류패션, 식음료품, 화장품 등이다.

### 소매 전자상거래 국가별 비교

2017년 기준 (단위 : 억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국가	중국	미국	일본	영국	<b>대한민국</b>	독일	프랑스	인도	캐나다
금액	4,489	3,660	788	738	<b>513</b>	491	410	298	242

출처 : Invest KOREA(Retail E-commerce Sales by country,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

**소매 전자상거래 국가별 시장 규모 예상** 2019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순위	1	2	3	4	5
국가	중국	미국	영국	일본	<b>대한민국</b>
금액	19,895	6,006	1,371	1,136	<b>866</b>

출처 : e-Marketer(2019.3)

**대한민국의 품목별 전자상거래 구성** (단위 : %)

품목	여행 교통	가전전자 통신기기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구성	14.2	11.3	10.4	9.6	8.7

출처 : 통계청, 2019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2019.9)

### 3. 수출과 대외무역

대한민국은 수출과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당시 3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던 무역규모는 1960년대 시작된 산업근대화과 전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에 힘입어 1988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불과 23년만인 2011년에는 연간 무역규모 1조 1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미국,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무역1조 달러 달성국가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조 달러)

구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대한민국
달성 년도	1992	1998	2004	2004	2006	2007	2007	2007	<b>2011</b>
무역 규모	4.19	2.88	4.61	1.48	1.27	1.34	1.05	1.16	<b>1.14</b>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2017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총 77개이며 품목 수 기준으로 세계 12위이다. 주요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별 추이** (단위 :개, %)

품목	2014		2015		2016		2017	
화학제품	22	(32.8)	22	(32.4)	25	(35.2)	31	(40.3)
철강	11	(16.4)	12	(17.6)	15	(21.1)	13	(16.9)
섬유제품	6	(9.0)	9	(13.2)	7	(9.9)	8	(10.4)
비전자기계	7	(10.4)	7	(10.3)	4	(5.6)	5	(6.5)
수송기계	4	(6.0)	5	(7.4)	4	(5.6)	4	(5.2)
전자기계	7	(10.4)	4	(5.9)	6	(8.5)	4	(5.2)
기타	10	(15.0)	9	(13.2)	10	(14.1)	12	(15.5)
총계	67	(100)	68	(100)	71	(100)	77	(100)

주 : ( ) 는 비중 / 출처 : 한국무역협회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2019.3)

**4. 거대한 FTA 경제 영토**

대한민국은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 5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세계 경제권에 쉽게 진입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매우 유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FTA 체결 현황**

구분	국가
발효국가	EFTA, EU, 터키, 인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ASEAN,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페루, 칠레, 중미
서명/타결국가	영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협상 중 국가	RCEP, 필리핀, 한·중·일, 에콰도르, Mercosur, 러시아, 말레이시아
재개, 개시, 여건조성	멕시코, GCC, EAEU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19.11)

## 대한민국과의 FTA 발효국가 현황



## INFORMATION

FTA 무역종합센터에서는 FTA 콜센터를 운영하여 FTA를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FTA 콜센터 전화번호 : 1380

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6개국 14개도시) : 1600-7119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okfta.kita.net>



## 인프라

### 1. 물류 HUB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웃하고 있으며 인천, 김포 및 각지 국제공항, 그리고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항구를 이용한다면 대한민국에 도착 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국내·외 61개 도시에 4시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인프라 강점이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항공화물운송 부문 세계 3위, 국제항공여객 부문은 세계 5위의 동북아 허브공항이며, 부산항은 세계 150개국 600여 항만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UNCTAD가 발표한 항만연결성 지수(PLSCI)에서 항만 및 해운 연계성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며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In Detail

PLSCI(Port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는 항만의 선박수용능력, 컨테이너 정기선 입항 빈도 등 6가지 기준을 **준으로 UNCTAD가 2006년부터 전 세계 900개 컨테이너 항만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지수이다.**

### 국제항공화물운송

2018년 기준 (단위 : 백만 톤)

순위	1	2	3	4	5	6
도시	홍콩	상해	<b>인천</b>	두바이	타이페이	도쿄
화물	5.02	2.92	<b>2.86</b>	2.64	2.31	2.20

### 세계 5위권 컨테이너 항만의 PLSCI 변화 추이

	2006	2014	2019
상하이항	81.67p	120.22p	134.32p
싱가포르항	94.94p	111.11p	124.63p
<b>부산항</b>	<b>77.38p</b>	<b>101.46p</b>	<b>114.45p</b>
닝보항	56.04p	96.91p	114.35p
홍콩항	100p	107.24p	102.79p

2006년도 홍콩항의 연결성 지수(PLSCI) 100p를 기준  
출처 :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19.8.12.), <https://unctadstat.unctad.org>

## 2. 전기공급

2019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기업환경평가 결과, 대한민국은 전기공급 분야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전기공급부문의 평가는 공통조건(지역, 전기신청규모, 건축물크기, 용도 등 가정)하에서 얼마나 간편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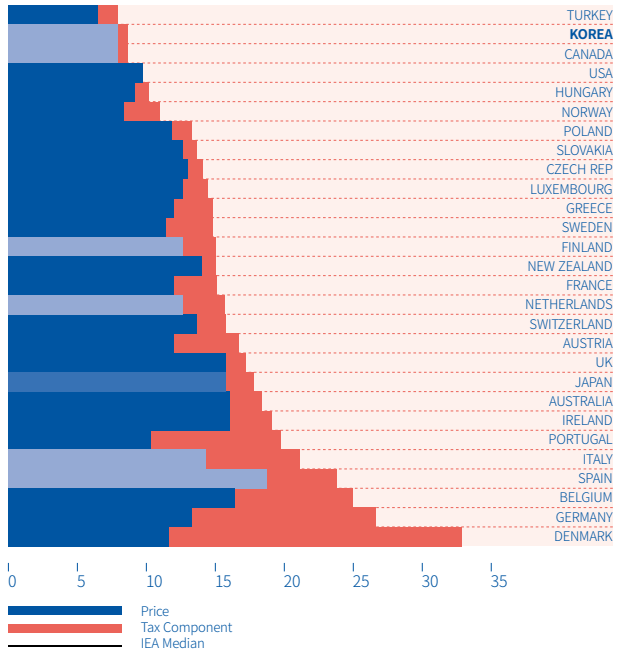
### 전기공급 국제비교

순위	1	2	3	4	5
국가	UAE	대한민국	홍콩	말레이시아	독일

출처 :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9 Report"

대한민국의 1인당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8개국 가운데 2번째로 저렴하다.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덴마크에 비해 25% 수준이다.

### 대한민국의 전기공급 국제비교



### 3. 상수도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 OECD 주요국 도시의 상수도 요금 비교

도시	서울	뉴욕	런던	도쿄	취리히	암스 테르담	코펜 하겐	스톡 홀름
US\$/m <sup>3</sup>	<b>0.53</b>	3.94	3.98	2.18	4.65	4.53	7.63	2.52

출처 : OECD "Environment at a Glance 2015"

### 4. 통신망

대한민국의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균 인터넷 속도는 28.6 Mbps로 세계 톱이다. 모바일 기기의 다운로드 속도 역시 2019년 4월 5G 상용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50 Mbps를 돌파하여 세계 1위 수준이다.

#### 평균 인터넷 속도(Average Internet Speed)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b>대한 민국</b>	노르 웨이	스웨덴	홍콩	스위스	핀란드	싱가 포르	일본
속도 (Mbps)	<b>28.6</b>	23.5	22.5	21.9	21.7	20.5	20.3	20.2

출처 : Akamai Technologies (1Q 2017)

#### 모바일 기기 다운로드 속도 (Mobile Download Speed Experience)

순위	1	2	3	4	5	6	7	8
국가	<b>대한 민국</b>	노르 웨이	캐나다	네덜 란드	싱가 포르	호주	스위스	덴마크
속도 (Mbps)	<b>52.4</b>	48.2	42.5	42.4	39.3	37.4	35.2	34.6

출처 : Opensignal (2019.5)

**대한민국의 모바일 요금**

(단위 : US\$)

구분	500MB, 100 calls	1GB, 300 calls	2GB, 900 calls
대한민국	7.24	19.58	30.77
OECD 평균	22.46	29.78	36.77
대한민국의 순위	1	15	19

출처: ETRI Insight 2018-05 해외 모바일 요금 비교 방법론 검토 및 시사점(변재호·남상준·서한결)

OECD Broadband Portal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OECD 35개 회원국의 요금을 3개의 바스켓(low, medium, high)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2018.6.28.)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사용량이 적은(low) 바스켓의 요금이 비교국 대비 최저수준이며 그 외의 바스켓(medium, high)의 요금도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STARTING

## 투자의 시작



### 외국인 직접투자의 요건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의 유형으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해외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받는 경우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본다(2020년 시행 예정).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된다.

### 외국인직접투자 정의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내 법인 또는 기업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투자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1호, 제5호

## 투자가능 업종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1. 투자의 제한을 받는 경우

-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2. 외국인투자 제외 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관리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등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교육기관(유아,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 단체 등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1

### 3.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미개방 업종**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 **외국인투자비율 50% 미만 허용**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내항 및 항공의 여객·화물 운송업,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등
- **외국인투자비율 49% 이하 허용** 프로그램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무선 및 위성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미만 허용** 수력·화력·태양력·기타 발전업
- **외국인투자비율 25% 미만 허용** 뉴스제공업
- **기타 일부 사업 제외 업종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농·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별표 2

## 외국인투자의 유형

### 1. 지분취득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기존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 2.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 외국투자가 또는 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최초 대부계약 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

## In Detail

### 자본출자관계

#### 법인출자기업

외국법인(해외모기업)이 외국투자자인 경우

-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이 발행주

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개인출자기업

외국인 개인이 외국투자자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3.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020년 시행 예정)

### 4.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로 인정된다.

①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②항, 제④항~제⑦항

## 출자가능한 자산(출자목적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①항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 ② 자본재
-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
- ④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⑤ 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청산에 따른 외국인 잔여재산
- ⑥ 장기차관 또는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 ⑨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 ⑩ 외국인이 소유하고 국내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8호





### Q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 자격이 유지되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자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②항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Q2. 외국인 2명이 공동투자하여 총투자금액이 합산하여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이 되나?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도 1명당 투자금액이 각각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③항

### Q3. 장기차관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 상환하거나 중도상환한 경우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총 차관금액에서 상환한 차관 금액이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 가중평균상환기간 개념

예)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8년간 10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매년 2백만 달러 씩 5회에 걸쳐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은?

가중평균상환기간 6년으로 요건 충족된다.

\* 6년 = (8년X2/10) + (7년X2/10) + (6년X2/10) + (5년X2/10) + (4년X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②항

### Q4.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외국투자자의 최초 투자신고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 투자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등록 후 동일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종의 증액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므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다.

### Q5.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에 해당되는가?

외국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 분류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Q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단체이나 외국투자가가 이러한 조합의 지분을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이 경우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특별법\* 등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출처: 국민신문고 FAQ

**Q7.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적용 대상 회사 규모

- 신고회사(외국투자가) : 자산 또는 매출 3천억 원 이상
- 상대회사(국내기업) : 자산 또는 매출 3백억 원 이상

② 신고 대상 기업 결합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20%(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외국투자가의 자산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신고 대상이나 자산 또는 매출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사전신고(이행행위 금지)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함. 다만,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외국환은행 등 수탁기관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함(이행행위 금지에 저촉되지 않음)

**Q8. 자본재에는 기계 및 차량 등의 시설들만 포함 되나?**

자본재에는 원료(시운전용 제외), 원자재 등을 제외하고 판매용이 아닌 산업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시설, 시운전용 원료, 기술 용역 등이 포함된다.

-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 포함)로서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 어패류
- 해당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료·예비품
-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9호

**Q9.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번 근로소득으로 법인 설립 시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인정되는가?**

국내원천자금은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업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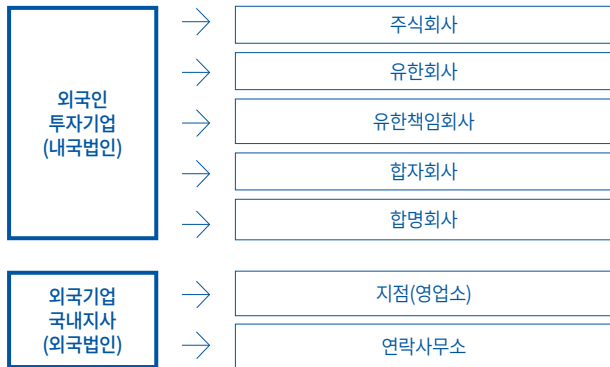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자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이다.

### 법인유형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 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지점, 연락사무소의 비교

항 목	외국인투자기업	지 점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상호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자본금 요건	1억 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장부기록의무 없음
법인세율	납세의무 있음(p.140 참고)		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소득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없음	없음

☞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7-6호서식)대상이 된다.

## 법인형태

「상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5가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 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1. 주식회사

회사에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양도가 용이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법인들이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 2. 유한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감사 면제 등의 적용을 받아 기업의 정보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주식회사	유한회사
취지	대규모 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 있는 소수자로 구성
최소자본금	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	좌동
지분단위	100원 이상	좌동
출자양도	제한 없음	사원총회 승인 필요
사채발행	가능	불가능
이사회제도	있음	없음
이사의 수	3인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1인 이상
감사의 수	필수(자본금 10억 원 미만 & 비출자임원이 있는 경우 불필요)	불필요
상장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In Detail

### 외부감사대상

#### ① 주식회사

- 증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또는 증권상장예정법인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4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 ② 유한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부채총액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사원(출자자)수	50인 미만

유한회사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주식회사 보다 높음  
 ※ 관련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②항(시행: 2018.11.1)

## FAQ

### Q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사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본사로부터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주재(D-7)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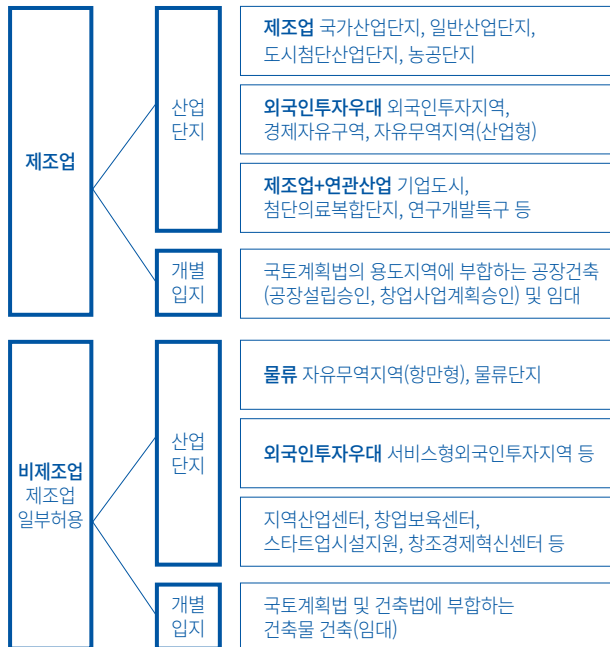


## 입지선정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입지 선정에는 해당 기업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설립이 용이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개별입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주요 사업장과 관련 시설이 집적화된 계획입지로서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쉽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비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집적지, 센터 등을 선택해 입주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특수입지로는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있다.

### 업종별 입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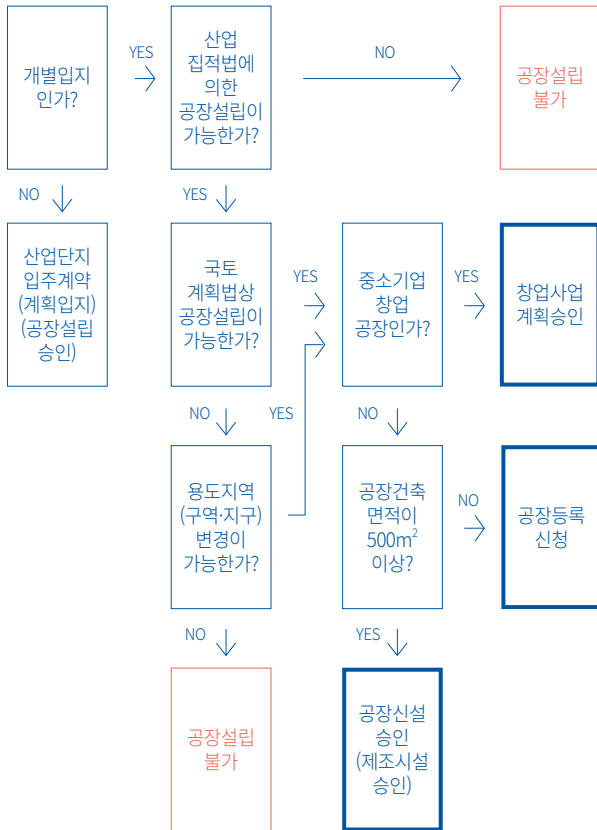




## 제조업의 입지유형

제조업의 경우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입지에 따라 공장설립절차 및 인허가가 다르다.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나, 산업단지 같이 제조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특별지역은 공장설립 기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다. 특히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장등록 없이 제조업이 가능하다.

해당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토지이용제한, 공장건축 가능여부, 환경관련 규제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2018 산업입지요람)

## 1. 산업입지와 개별입지

대한민국은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공장을 산업단지에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여건,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취득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 ①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 하에 지정·개발한 지역으로,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를 돕고 산업의 집적을 통한 협력기업 및 인력 확보, 원활한 원자재·부품 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최근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등 복합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지 유형이 다양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업종 관리 방식도 개별입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같은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입지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다르고, 각각의 단지별로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각 단지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지를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은 각 개별법을 따른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 INFORMATION

### 산업단지의 공장 매각(처분) 제한

산업단지는 산업집적을 유도하고자 실제가치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고 입주한 후 단시일 내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그 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통한 공개매각, 매수가격통제 등의 처분신청제도를 통해 매각 가능하다.

☞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부지를 매수한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② 개별입지

개별입지는 계획적으로 지정·개발된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 외의 토지나 도시·주거지역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했을 시, 직접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조업종의 사업을 위해 개별입지를 선택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입주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별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일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용도지역별 가능업종은 「공장입지기준 고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참조

###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산업단지	개별입지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 등 SOC 여건 양호</li> <li>· 공장설립 관련 허가 절차 용이</li> <li>· 기업 집적으로 기업 간 정보·기술 교류 용이</li> <li>· 물류비 절감</li> <li>·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개별입지에 비해 원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렴한 토지 확보 가능</li> <li>·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li> <li>· 제품판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가능</li> <li>· 소규모 입지 선택 가능</li> <li>· 공장부지의 처분이 용이</li> </ul>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설립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매각 시 별도 제한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li> <li>· 산업단지에 비해 조세 감면, 금융지원, 인센티브 부족</li> <li>·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직접 설치</li> <li>· 공장 주변 환경요소 통제 곤란</li> </ul>

## 2. 공장설립

공장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건축물 또는 공장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 이때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 In Detail

#### 공장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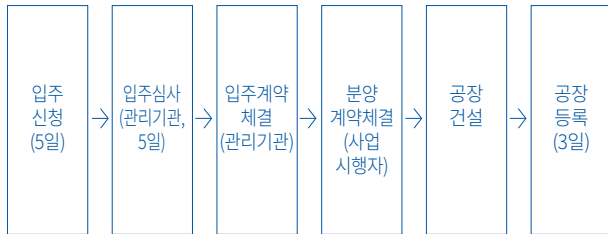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
- 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① 산업단지 공장 설립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달리 많은 부분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고, 업종 또한 산업단지별로 제한되어 있어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동일한 행정효과가 있는 ‘입주계약신청’을 관리기관에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5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10일 내 승인이 이루어진다.

입주승인 후 공장건설, 완료신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확인 및 공장 등록까지의 절차는 개별입지의 절차와 같다.

#### 공장설립 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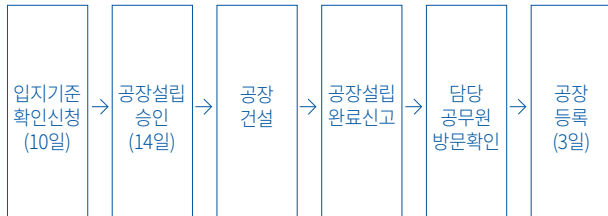


② 개별입지 공장 설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별입지 공장 설립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이 많아 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시 대한민국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토 후 승인을 받는다. 설립하려는 공장 부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청을 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제처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7일 이내로 승인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의제처리: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 입지기준 확인신청

해당 토지에 대한 공장 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공장건설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후에 토지 평탄화, 기반시설 설치, 건축 등을 시행한다.

• 공장등록

건설 및 기계, 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에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최초 신청한 것과 같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립 완료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을 한다.

**INFORMATION**

**제조업소**

제조를 위한 건축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제조업소의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 업종별

행정절차 이행 후 제조업 영위가 가능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장등록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을 완료할 수 있으며, 공장 설립 승인을 통해 인허가의 제도 함께 득할 수 있다.

**소기업**

소기업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로서 제조업소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자가 공장등록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증명서류로 간주한다.

※ 관련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㉞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별입지 공장 설립**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

부담금	관련법	부담금	관련법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38조	폐기물 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①항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제38조제①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①항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⑥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①항
기본 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②항제1호	물이용 부담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①항
기본배출 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①항제1호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①항
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제①항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제①항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부담금 면제. 다만,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면제

※ 관련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 In Detail

### 공장설립 제한 및 예외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m<sup>2</sup>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①항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적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축면적 500 m<sup>2</sup>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④항

성장관리지역 중 평택시 안에서는 건축면적 500 m<sup>2</sup>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일정 업종에 한한다.

※ 관련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Factory-On(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공장설립 정보제공, 설립실무 안내, 공장설립 민원, 산업단지입주, 제증명신청 등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공장설립지원센터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13개소에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서울, 인천, 경기, 원주, 천안, 대구, 구미, 울산, 부산, 창원, 광주, 군산, 광양)

홈페이지 [www.femis.go.kr](http://www.femis.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팀  
070-8895-7266

### 공장설립 절차 법령

법령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부지조성 인허가, 입주계약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가능(개별입지)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토지이용 관련 법령

법령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구분(건축, 용도변경 절차 규정)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절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법률

법령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내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사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INFORMATION

공장 설립 시 환경 인허가 및 공장 운영 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참고 자료

외국인투자기업 환경정책 2020 (KOTRA)



## 비제조업의 입지유형

### 1. 산업단지

비제조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입지선정이 자유로우나, 비제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제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아래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비제조업종으로, 확실한 입주 가능 여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입지 제한은 없다.

구분	업종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교육서비스업 등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 통신업
자원비축시설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화물터미널·그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등

※ 관련규정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2. 개별입지

#### ① 물류단지

물류단지란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 중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는 물품 하역업·운송업·보관업·전시업·복합물류관련사업(포장·보수·가공·조립업)·국제물류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 관련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6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기 위해 건립된 복합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도로 정하는 시설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 INFORMATION

###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제한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밖에 위치한 경우, 해당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제조업 시설은 도시형공장(일부 업종 제외)의 시설에 한정된다.

입주예정업체의 생산지원시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있던 기존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관리기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②항, ⑥항

### ③ 창업보육센터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 공간, 경영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보육기관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저렴하게 임대사업장을 확보하고 공동 범용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창업자금 부담이 감소되고 경영·기술·법률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학과 국공립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건립 소요자금을 80% 이내(사업자당 1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 ④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9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멘토링, 창업 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창업세미나, 지역창업자·기업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ccei.creativekorea.or.kr](http://ccei.creativekorea.or.kr) 

## 환경관련 법률

법령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을 규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 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취급 현장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지침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 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조세지원

법령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산업입지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의 외국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 있으며, 입지는 임대 또는 분양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지원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이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1.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극대화해준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외국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도 활용된다.

새만금은(2018.4.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 새만금 특별법으로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용지 공급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새만금 현황



**인천 / 인천공항, 인천항**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 국제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환경, 물류, 의료, 교육, 첨단산업 등 발달



**충북 / 청주공항**

중부 내륙권역에 위치하여 전국 최단접근성 확보. 차세대 전략산업인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IT, BT융복합산업의 중추이며, 동북아 항공정비 산업의 허브를 지향



**황해 / 평택, 당진항**

환황해권 중앙에 위치하며 국제협력의 거점으로서, 평택항을 관문으로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및 지식 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 됨.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클러스터를 지향함



**새만금**

군산산업단지 등 풍부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관광을 포함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를 지향



**광양만권 / 여수공항, 광양항**

태평양 기간항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편리하고 신속한 생산 및 물류 인프라를 구비.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국제무역도시」 비전을 지향함



**동해안권 / 양양공항, 동해항**

비철고속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개최지. 국내 최대 비철고속 클러스터, 녹색소재산업, 국제물류·비즈니스 단지를 비롯, 세계적 명품 해양 관광의 중심지



**대구경북 / 대구공항**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IT / SW 산업 및 의료, 철강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풍부한 인적자원을 자랑



**부산, 진해 / 김해공항, 부산항**

물동량 세계 6위의 부산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피터항과 연계된 국내 최대 물류거점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산업 클러스터 및 휴양·레저의 중심지

## 2.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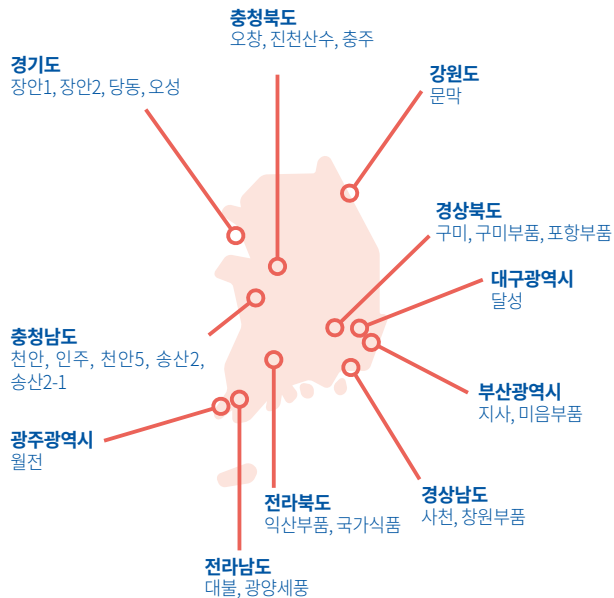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지정 현황(개)	26	84	3

###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은 부록 참조

지역별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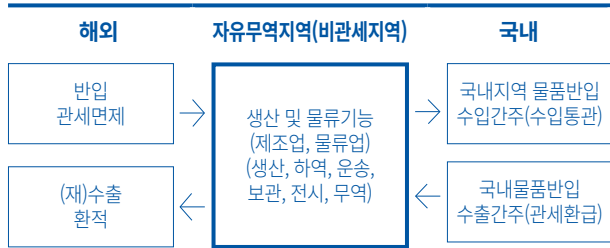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지명	임대료 (원/m <sup>2</sup> -월)	단지명	임대료 (원/m <sup>2</sup> -월)	단지명	임대료 (원/m <sup>2</sup> -월)
천안(충남)	310	장안2(경기)	303	월전(광주)	(1차)190 (2차)250
대불(전남)	69	달성(대구)	218	문막(강원)	249
사천(경남)	224	구미부품(경북)	151	진천산수(충북)	144
구미(경북)	165	오성(경기)	323	송산2(충남)	290
오창(충북)	223	포항(부품)	127	국가식품(전북)	126
장안1(경기)	258	익산(부품)	103	충주(충북)	160
인주(충남)	161	창원남문(부품)	451	송산2-1(충남)	290
당동(경기)	383	미음(부품)	425	광양세풍(전남)	248
지사(부산)	438	천안5(충남)	207		

3. 자유무역지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시설 등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관세유보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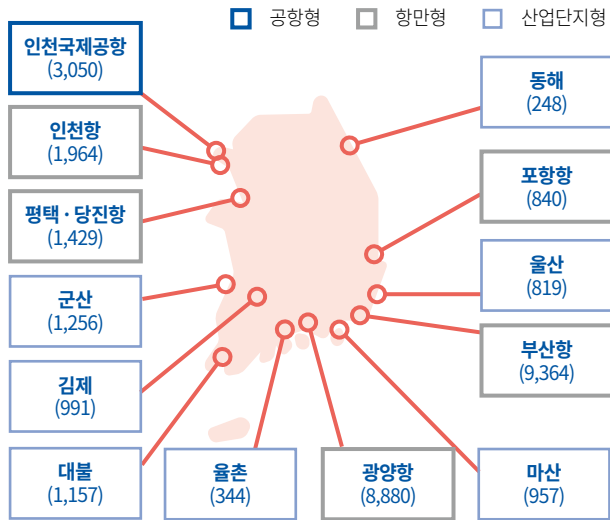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출처 : 산업연구원,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의 내실화 방안 연구」, 2013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2018년 12월 말 (단위: 천km<sup>2</sup>)



### In Detail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지식산업·국내 복귀기업·수출입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써 이전 3년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

상인 기업 등에게 주어진다. 기타 하역운송 등 서비스 업체와 공공기관 등 제한 자격 등이 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4. 특정산업 육성지역 입지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해당 특구지역 내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특화, 연계산업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지의 운영 및 관리는 각각의 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준해 이루어지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리계획을 확인해 입주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한다.

### 특정산업 육성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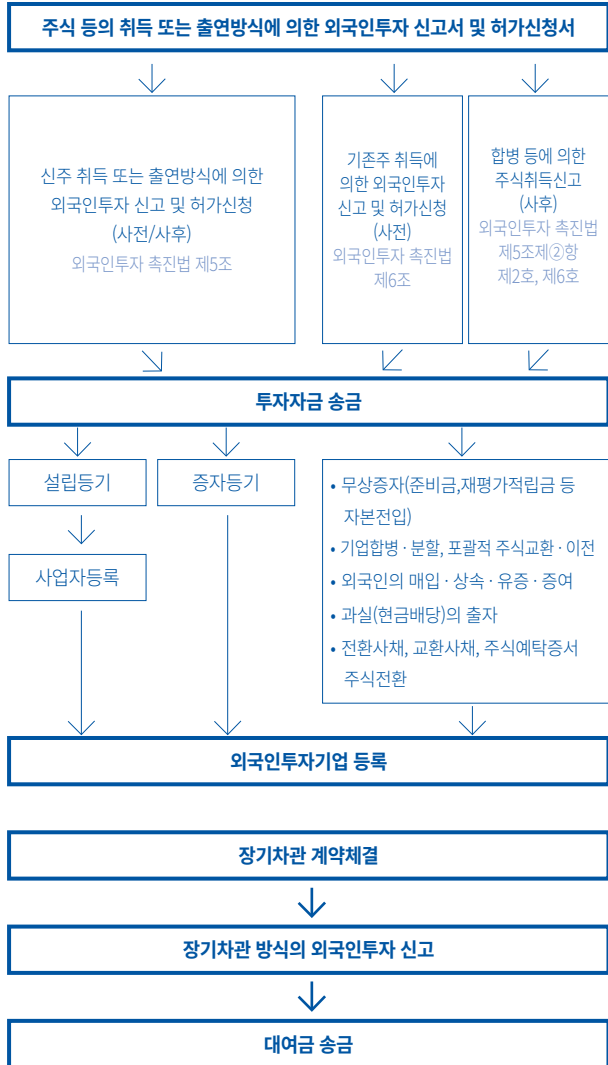
구분	지정 지역	관련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선서혁신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 관한특별법」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신동, 둔곡, 도룡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투자실행  
법인 설립  
증자  
기존주 취득  
장기차관

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 기업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외국인투자 흐름도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아래와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 필요서류

#### 외국투자가가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 외국투자가

국적증명서(개인의 경우 여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제증명서류)

외국법인 대표자의 여권사본 / 외국법인 주주명부(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리인 선임 시 : 위임장 2부

##### 임원(외국인)

취임승낙서(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 여권사본

##### 대표이사(외국인)

취임승낙서 /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여권사본

## INFORMATION

### 아포스티유(Apostille) 체결국가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제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피지, 필리핀, 대한민국 (18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라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52개국)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1개국)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30개국)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부룬디, 튀니지 (12개국)
중동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4개국)
계	117개국

출처 : HCCH(Hague Conference) [hcch.net](http://hcch.net)

###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제증명서류)

#####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1600-7119)

## In Detail

###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④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②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가능하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 INFORMATION

### 임시계좌 개설

국적증빙서류(외국투자가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필요 서류

#### 법인설립등기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iros.go.kr](http://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 4. 인허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In Detail

##### 인허가 항목 예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수입판매업, 식품	점업, 숙박업, 건강식품 판매업, 건강식
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 의료기기판매	품 수입판매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
업,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 수입판매	업, 주류수입업, 직업소개업 등
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포함), 음식	

####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 6. 법인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필요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 1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외국환매입증명서 / 대표자여권 /

외국인투자 신고서 / 인허가증(필요사업만) 등

\* 신청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 필요 서류

##### 법인통장 개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본사주주명부(실제 소유자 확인서) / 주주명부

\* 개설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In Detail

#### 단계별 신고서 또는 신청서 양식

단계별 신청서는 각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서식  
인베스트코리아 [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 → 정보센터 → 자료실 → 자료서식
- 법인설립등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 검색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서식

## INFORMATION

### 1. 법인설립 비용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의 회사설립비용의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항목	금액 (원)	비고
등록면허세	1,200,000	납입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내 설립 시 3배증과)
지방교육세	240,000	등록면허세의 20%
대법원 수입인지	25,000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1,000,000	정관 등
합계	2,465,000	

☞ 상기표에는 실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수수료는 제외되어 있다.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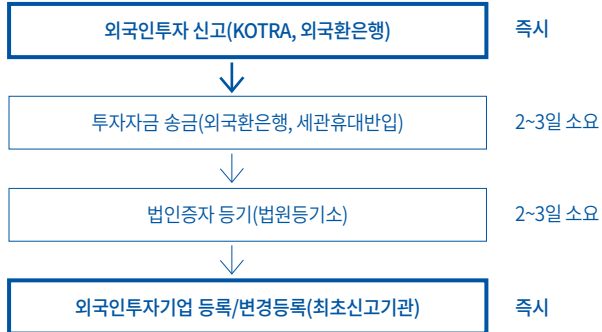
##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① 서울특별시
-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볼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③ 의정부시 ④ 구리시
- ⑤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⑥ 하남시 ⑦ 고양시 ⑧ 수원시 ⑨ 성남시 ⑩ 안양시 ⑪ 부천시 ⑫ 광명시 ⑬ 과천시 ⑭ 의왕시 ⑮ 군포시
- ⑯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www.moleg.go.kr) → 검색창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별표, 서식 → 별표1

## 증자

### 외국인투자 흐름도



###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2.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 3. 증자등기

증자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 필요 서류

#####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제1호 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제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투자종합상담실(1600-7119)

#### 필요 서류

##### 증자등기 시(법인변경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변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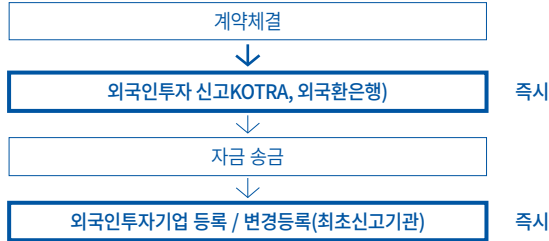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관련 계약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변경 등록 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반납

※ 문의처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1600-7119)



## 기존주 취득

### 외국인투자 흐름도



#### 1.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

외국투자자와 기존 주주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2.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취득 시 증자 등기가 필요하나 기존 주식 취득 시에는 증자 등기가 필요치 않다.

### 필요 서류

#### 기존주 취득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여권, 법인: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제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명서류 (예.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예. 주식매매계약서)

※ 문의처: KOTRA 투자종합상담실(1600-7119)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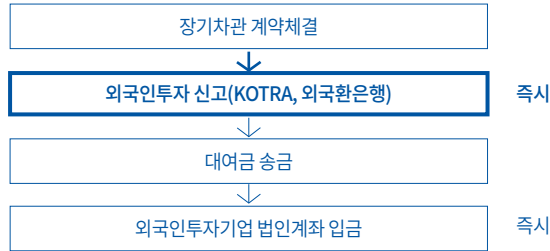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관련 계약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변경 등록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반납

※ 문의처: KOTRA 투자종합상담실(1600-7119)

##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 흐름도



#### 1. 계약체결

차관제공자와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장기차관 계약을 체결한다.

#### 2.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수탁기관인 KOTRA 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 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3. 대여금 송금

차관제공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 4. 입금

외국인투자 신고서에 따라 차관제공자로부터 차입금을 외국인투자기업 통장에 입금받는다.

### 필요 서류

####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신고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 해외모기업 또는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계약서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투자종합상담실 (1600-7119)

## INFORMATION

### 1.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용어	신고항목	비고
사전 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내용 변경신고	신주, 기존주 취득 또는 출연 (단, 방위산업체인 경우 기존주 취득 시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신청)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
사후 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상장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 취득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30일 이내)

## 2. 사업운영 중 변경사유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

사업 운영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변경신고, 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사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상호	○	○	○
주소	○	○	○
자본금	○		○
지분율	○		○
목적사업	○	○	○
임원	○	○ (대표자의 경우에 한함)	
대표이사 주소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변경사항

### ① 외국투자법인 변경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신고 후 변경 등록 한다.

### 필요 서류

#### 외국투자법인 변경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필요시 추가첨부 서류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 시)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 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 「상법」 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 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In Detail

### 변경등록의 예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 외국투자자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자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②항제2호~제6호

###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별표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종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반납

\* 말소 대리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FAQ

**Q1.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증가되어 납입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증가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증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Q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 등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3. 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외국인투자업무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탁기관 변경이라고 한다. 신청양식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준칙」 별지 제2호서식(수탁기관 변경신청서)을 사용한다.

(양식 다운로드 [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 → 정보센터 → 자료실 → 자료서식)

**Q4.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때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가?**

외국인투자 신고는 신고내용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투자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신고철회 포함)를 할 수 있다.

**Q5.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Q6.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인투자자금과 별도로 설립비용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설립등기가 종료되면 모회사에 반환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Q7.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가 장기차관을 주식 또는 지분으로 직접 전환할 수 있는가?**

중전에는 “주주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상법조문 때문에 실제로 차입금을 준비하여 상환절차를 거쳐 주금납입을 하거나 법원의 승인하에 채권의 현물출자 방식으로만 출자전환이 가능하였으나 주주의 회사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던 「상법」 제334조가 삭제됨으로 인해 지금은 장기차관을 법원의 승인 없이 직접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하다.

**Q8. 외국인투자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가?**

현재 온라인 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외국투자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KOTRA 투자거점 무역관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투자거점 무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페이지 [investkorea.org](http://investkorea.org) →정보센터 →IK 소개→본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Q9.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10.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BUSINESS IN KOREA 202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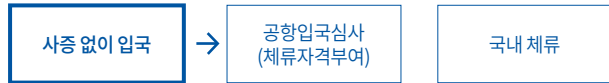
비자·체류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무사증국가의 국민이 입국하여도 무단 입·출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의 경우에도 국경이나 공항, 항구 등에서 출입국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입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또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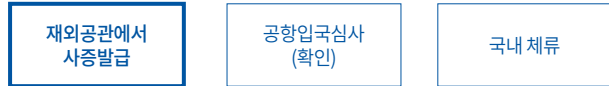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①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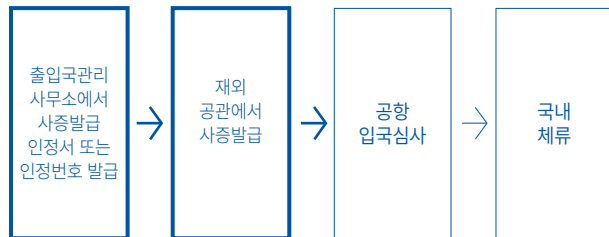


②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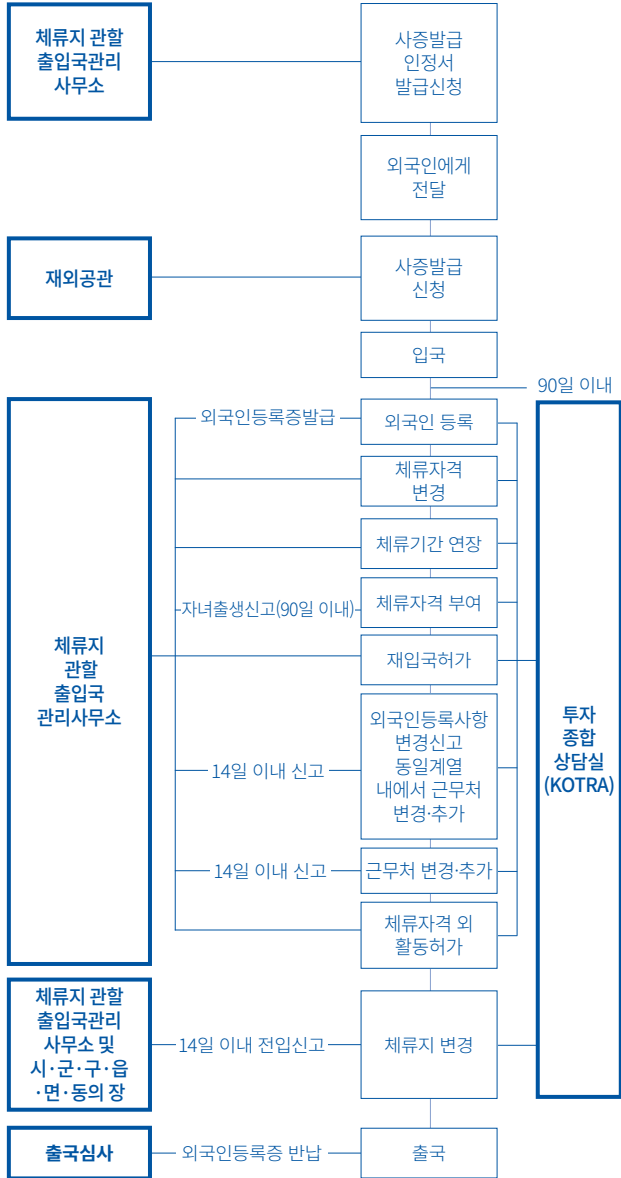
③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사전예 초청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 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 1. 사증발급

### ① 절차

사증발급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은 사증을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는 방법, 단기방문사증 보유자 또는 사증면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입국 후 출입국심사를 통해 체류자격과 기간을 부여받는 방법, 그리고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 ② 사증발급 방법

- 재외공관장에게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재외공관장 사증 발급 범위 : 법무부 장관이 위임한 사증만 가능하며 주로 단기체류 사증이다.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내초청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여 인정서 또는 발급번호를 받는다. 후자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 사증을 발급받는다.
- 단기방문 사증 보유 또는 무사증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D-8 등)을 변경한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인정유효기간 : 3개월

## 2. 외국인등록

91일 이상 장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3.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이 기존에 승인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 INFORMATION

### ①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 ③ 체류와 관련한 외국인 본인 신청 의무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본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가사, 업무상 사정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에도 외국인 본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해외 체류하면서 여권을 공수하여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 신청 제한 및 허가 취소 등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상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4. 변경 시 신고사항

### ① 근무처 변경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근무처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E-1~E-7 사증소지자)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 ② 체류자격의 활동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부수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위반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 ③ 체류지 변경

등록외국인이 그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주의 신고의무

취업활동 자격이 부여된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출처: 알기 쉬운 외국인고용과 비자 실무가이드(박길남·정봉수, 강남노무법인 권)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외국투자자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위하여 KOTRA에서 투자종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파견되어, 체류지 관할구역 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업무, 체류지 변경신고와 기업투자(D-8)체류자격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추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투자지원센터(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함)에서도 외국투자가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의 체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체류외국인의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 수원, 인천 등 수도권 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 접수증을 소지하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공서를 방문하면 긴 대기 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 INFORMATION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 사증과 각종 체류허가에 대한 내용 안내

### 하이코리아 : [hikorea.go.kr](http://hikorea.go.kr)

- 사증 및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체류민원방문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

##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 1. 기업투자 (D-8) 사증

#### ① 발급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 또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모기업뿐만 아니라 관계회사의 직원들도 파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파견명령서는 본사발행이 원칙이고 반드시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필수전문인력은 경영·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In Detail

### 필수 전문인력 범위

####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 상급관리자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 지휘 /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 전문가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 신청기관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 ② 국내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일부 국가의 국민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개별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부 국가의 국민 등의 경우는 국내에서 D-8 사증으로 체류변경이 불가능하다.

## INFORMATION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의 사증 발급 취급 업무

- 사증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서 D-8(투자), F-3(동반), F-1(방문동거)의 자격변경 및 연장업무 등이 가능하다.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증명발급 등)
- 사업장이나 체류지에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외국인에게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비자는 당일발급이 가능하다.

**③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에게 해당된다.

**④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체류기간변경서류와 유사하며, 실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필요 서류**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시(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통합신청서 1부(「출입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고위험국가\_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원칙, 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본사발행)

\*지사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에도 파견명령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에 있는 투자자가 발행해야 한다.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 중에서 택 1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중에서 - 납세사실증명(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_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시(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합신청서 1부(「출입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고위험국가\_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통장 및 법인

통장 거래내역 사본 /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제국 서류(필요시 징구) /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_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후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_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_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2. 특정활동(E-7) 사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한 분야에서(85개 직종) 근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형태로서 원칙적으로 사증인정발급신청에 의하여 사증을 취득하게 되나 첨단기술의 전문적인 기술자 등 제한된 경우에는 체류 자격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

## 3. 동반 (F-3) 사증

D-8 또는 E-7 등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동반가족에게 부여되며 동반하는 가족은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 In Detail

#### 사증신청 시 유의사항

자료제출 시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 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증 및 체류심사를 위

#### 필요 서류

##### 동반 (F-3) 사증 발급 시(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D-8-1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수수료\_ 자격변경 10만 원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 원(현금)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필요 서류

##### 동반 (F-3) 사증 발급 시(체류기간 연장)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D-8-1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수수료\_ 연장수수료 6만 원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 INFORMATION

### 체류자격의 종류(36개 체류자격 구분)

구분	체류자격별 대상
외교공무(A)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비영리단기(C)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장기체류(D)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취업(E,H)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H-2(방문취업)
동반거주(F)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동포, 난민 제외, 결혼이민(F-6)
기타(G)	기타(G-1)

☞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 C-3(단기방문),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영주)

## 출입국 우대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투자자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투자자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당일 처리하고 있다.

### 1. D-8 사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투자사증(D-8)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 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면제 항목 : 외국인등록증발급(3만 원), 체류기간연장허가(6만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10만 원),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12만 원), 재입국허가(3~5만 원)

☞ 체류자격 및 활동 허가 수수료(12만 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2천 원)는 면제되지 않는다.

## 2. 출입국우대 카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본사 또는 아시아 지역 본부의 경영진에 대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Fast track) 이용, 보안 검색 전용 창구 이용 등이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를 발급하고 있다.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요건

구분	외국인투자금액(신고기준)
제조업	미화 15백만 달러 이상
금융, 보험	미화 50백만 달러 이상
도소매, 운송, 창고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타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산업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할 때 외국인투자금액은 당초 신고금액의 50% 이상이 도착하여야 한다.

신청 및 문의처 :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02-3497-1971

## 고액투자가, 투자기업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 1. 거주(F-2) 사증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거주자격(F-2)을 부여할 수 있다.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한 자에 대하여도 F-2 자격부여가 가능하다.

### 2. 영주(F-5) 사증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영주자격(F-5-5)을 부여한다.

고액 외국투자가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임원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특별공로자 영주자격(F-5-12)을 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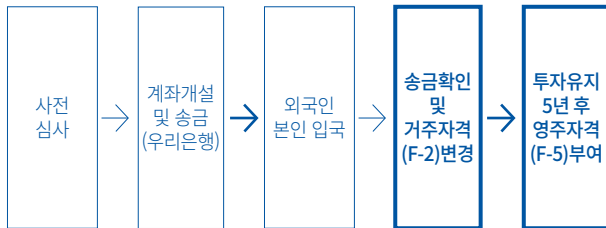
☞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당 임원 1명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법인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이 부여가능하다.

## 공익사업투자이민

고액투자자의 조건부 영주권 부여 제도로써 고액투자자의 조건부 영주 대한민국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하는 제도로써 투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혼자녀까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까지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절차



## In Detail

### 공익사업투자이민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원금보장 무이자 펀드에 5년 이상 투자한 경우 법무부, 한국산업은행에서 투자이민 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우대 금융대출 상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건립에 기여한다.
-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나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시 기존에 부여받은 거주자격이 상실된다.  
문의처 :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 032-740-7788, 7600

## 부동산 투자이민제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In Detail

부동산 투자이민자에 대한 안내문/ 출처 : [www.visa.go.kr](http://www.visa.go.kr)

- 투자상대 유지** 투자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주거나, 담보설정 또는 압류된 경우, 매매한 경우에는 투자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투자요건을 상실할 경우 외국인등록은 말소되며 투자비자로 계속 체류할 수 없다.
- 취업 또는 경제활동** 투자비자를 소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업, 경제활동, 학업 등이 자유롭지만, 사행행위나 풍속에 저해되는 영업이나 취업은 금지된다.
- 재입국허가 기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1년 안에 최소 1회 이상 국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된다.
- 체류기간 연장** 부여받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입국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된다.
- 문의처**  
법무부 투자이민센터(032-740-7888)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INFORMATION

### 비자 및 정주요건에 대한 참고 자료

한국생활가이드 2020 (KOTRA)

## FAQ

### Q1. 사증과 체류자격의 차이?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머물면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에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36개의 체류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VISA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 ADVANTAGES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투자과 관련하여 취득세·재산세·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대상	조세감면 내용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 제121의2 제④, ⑤항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법 제121의3 제①, ②항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제18조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

## 대상 및 절차

### 1.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의한다.

구분(관련 규정)	투자요건 등	
	대상사업	투자금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운영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①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입주기업으로 감면	제조업 등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휴양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SOC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공동사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조업	
	관광업	
	휴양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R&D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①항제1호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조업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①항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R&D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①항제2,5호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INFORMATION

###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11개 분야 40개 세부분야, 총 173개 기술

구분	분야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IT 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차세대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보안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성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5G 이동통신, UHD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장품 소재
에너지신산업·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타이타늄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 로봇, 로봇공통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개정 2019.2.12.)

## 2.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소재기술 11개, 공정기술 5개, 총 16개 기술

유형분류	대상기술
소재기술	고집적도 반도체 소재 기술
	플렉서블 전도성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소재 기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지능형 · 기능성 센서 소재
	탄소복합체 신소재 기술
	3D프린팅용 복합소재기술(친환경, 의료용, 심미용)
	고기능성 화학품 신소재 기술
	유전자 검사용 초소형 바이오 반도체 소재
	유무기 나노 하이브리드소재 (Organic-Inorganic Hybrid Nano-Materials)기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EP, Super Engineering Plastics) 소재기술
공정기술	지능형 전력반도체 모듈 기술
	대화면 플렉시블 OLED 제작 기술
	난삭 메탈소재 가공 및 공정 기술
	기능성(내열성, 초소형) 렌즈 수지 및 제조 공정 기술
	OLED 소재 패턴 정밀화 향상 기술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4 (신설 2017.3.17.)



## 2.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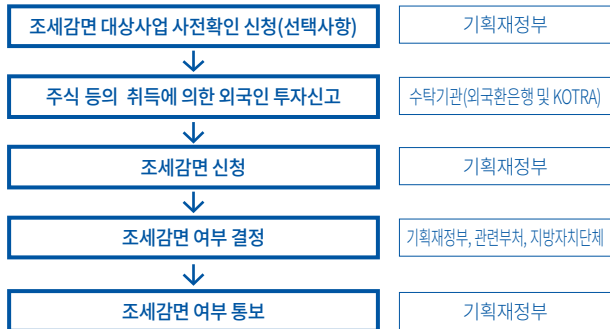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⑥항

신청서 제출처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25)이며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수탁은행) 및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2017.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5조제②항

신청기한은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 신청절차



### 필요 서류

#### 조세감면신청 또는 내용변경신청 시

신고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서)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0호서식: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에 따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각각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①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투자자가 투자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조세감면대상사업 여부 확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효력은 조세감면의 대상 기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신고 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⑦항

### ②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주무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③ 비감면 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한다.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⑧항,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①~⑥항

## In Detail

조세감면(조세감면내용 변경,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2017.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

## 필요 서류

###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시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1호서식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에 따른 제출 서류

각각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성장동력산업 조세감면 신청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Yes	No
1. 신청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의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조세감면신청서의 조세감면 신청내용에 정확히 작성) ex)「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2)자능정보 가.인공지능 분야 중 3)시각이해 기술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기술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특허권, 공인기관의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및 기술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신청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출		
① 기술의 핵심부분을 요약한 요약본(1~2p)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기술의 특성 및 구체적 설명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기술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범위 기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신청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①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업에 한함) 등의 설명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는 공장 위치 등을 증명하는 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신성장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하, 감면관련 사업)이 있는지 여부 •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관련 사업의 생산방식 및 공정표 등의 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주요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출처 : 기획재정부

## 감면혜택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구분	사업	기간 및 감면비율
취득세 및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과세표준에서 공제)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 및 사업자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④항

### In Detail

#### 예외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사업개시일 전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기산일을 ‘사업개시일’이 아닌 재산을 ‘취득한 날’로 하여 상기 기간 및 비율만큼 감면받는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⑤항

###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상기 감면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2.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① 신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간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장 신청하여 1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총 6년).

### ③ 제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필요 서류

###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시

신청서 1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3호서식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외국인투자)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조세감면결정서) 1부  
 대외지급수단 등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자본재의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 추징사유별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의 추징범위

추징사유	대상 조세	추징범위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말소일·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급하여 3년 내 감면세액 중 양도 후 외국투자자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취득세, 재산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x 주식 등의 양도비율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고용관련 조세감면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 요건에 미달할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신고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추징세액=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전 5년 이내 감면한 세액 x 주식 등 미달비율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8, 9

## ④ 감면세액의 추징 및 배제

감면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된 관세 및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⑤항, 동법 시행령제116조의10제②항

## In Detail

### 외국인기술자 적용대상

- |   |  |
|---|--|
| <p><b>1.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b></p> <p><b>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b></p> <p>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시설투자 1억 원 이상, 외국인투</p> | <p>자지분 30% 이상</p> <p>적용기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p> <p>※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9조</p> |
|---|--|

### 3.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

####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7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2021.12.31.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한하는 일몰조항)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③ 지역본부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지역본부에서 근로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기한의 제한 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2021.12.3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 ④ 과세특례 적용방법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 INFORMATION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공해 온 법인·소득세 감면제도를 2018년 말 폐지하였으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은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법인·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 결정된 기업은 2019년 이후라도 결정된 감면기간은 보장하고 있다.



#### 4. 내·외국인 동일 적용 세액공제

##### ① 특정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산출해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지원구분	법인세 공제율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2%
환경보전시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
근로복지 증진시설	
안전시설	중소기업 7%, 중견기업 5%, 대기업 1%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①항

#####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시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	공제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8)에 해당되고 전년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이며 전년대비 상시종업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할 것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

### ③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 세액 감면

지원구분	감면요건 관련규정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9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금융중심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 ④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지원 (고용증가 1인당 공제 금액) (단위: 만 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외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1,100	1,20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공제기간: 중소·중견기업 3년, 그 외 기업 2년 / 적용기간: 2021.12.31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

### ⑤ 고용 또는 산업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세액을 감면한다.(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한도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③항의 창업중소기업 31개 업종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 ⑥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공제

구분	감면요건	법인세 감면
창업 중소 기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 :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 5년간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전년대비 고용증가 실적에 따라 100%까지 감면 가능
일반 중소 중견 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6개 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법인세 5~3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투자 * 중견기업은 근로자수 감소 시 미적용	투자세액공제 - 해당 투자액의 3%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중견기업은 1~2%로 지역별 차등 적용) * 위기지역 내 기업이 투자 시 공제율 상향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7조

## INFORMATION

###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 1. 업종기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

#### 2.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 3. 독립성 기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혹은 기준 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특정 기간 동안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 4. 중소기업 관련 민원

① 콜센터 1357 (FAX) 042-472-6083

② 전자민원 중소기업부 [www.mss.go.kr](http://www.mss.go.kr)

민원참여 → 전자민원

③ 서면민원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④ 방문민원 정부대전청사로 방문, 중소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민원담당자 (042-481-8933)에게 연락

⑤ 기업마당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450여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입지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고시·관리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종류는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28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주요건 충족을 위한 외국인투자금액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주 취득이나 우회투자에 의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임대기간은 총 50년의 범위 내이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며 투자내용에 따라 임대료 및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 1. 입주대상업종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의 업종으로, 각 지역별 입주허용 업종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조세특례제한법」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산업발전법」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복합물류터미널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유통산업발전법」
-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 2.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단,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10%,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은 50%) 이

상으로 입주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거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 3. 입주한도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최소 12% 이상)을 적용하고, 업체별 임대면적의 한도는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입주한도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면적 크기에 따라 투자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 4.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연간 임대료는 당해 투자지역 취득가액(개별공지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지시가)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입주기업”,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입주기업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 임대료 감면

감면율은 외국투자가가 납입을 완료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시점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을 적용한다.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 이상으로 임대한다.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감면율	사업	조건		비고
		투자금	상시근로자수	
0%	입주기업	정상 임대료(취득가액의 1%)		
50%	입주기업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75%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70-150명 미만	-
90%	제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150-200명 미만	-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	소재부품 단지입주기업
100%	제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200명 이상	-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미화 100만 달러 이상	-	-

\* 감면율은 정상임대료에서 감면되는 비율, 현실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국·공유 재산 임대)  
 ※ 관련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6. 협력업체 입주제도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투자자의 희망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이다.

### 1. 지정기준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 2. 지정요건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하면서 공장시설(사업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 지정된다.

금액기준	업종기준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사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시 외국인투자금액 중 지정 전에 납입 완료된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개별 투자지역 지정 희망지역의 부동산 구입 등 외국인투자지역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자들 간에 투자계획의 실행과 이행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지정신청

시·도지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임대료 및 입주한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경우,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입주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한다.

### 5. 지정변경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투자계획 및 지정고시 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로 변경 고시 할 수 있다.

☞ 개별형 외국인지역 지정 현황 : 부록 참조

## 필요 서류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지제2호서식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 재원조달계획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관리기관 / 개발사업의 시행자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⑥항제2호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는 달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연구시설 등 서비스업종으로서 지역 및 건물에 대한 입주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1. 지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내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 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신고금액이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3. 입주대상 업종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은 제외)

### 4. 입주요건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 계약시점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최소고용인원**

구분	고용기준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연구개발업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금융 및 보험업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지식서비스산업	15인 이상	
문화산업		

-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 소득을 납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관광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①항에 따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이상의 투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3, 별표4

**5. 임대**

임대부지인 경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업은 50년),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6. 건물임대료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임대료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7. 국·공유 토지 등 임대 및 매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수익,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 예외 적용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수의계약 요건**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저 외국인투자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수의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최저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최저지분율 유지 예외

- 외국인투자가가 3년 이내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대규모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투자신고를 한 경우
- 5년 이내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 신성장동력산업 사업기술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경우
-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 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율**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개발법」 등에도 불구하고 50년 범위내로 할 수 있으며, 임대료율은 토지가액의 1%로 감면된다. 임대기간은 갱신 가능하나 동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2020년 시행예정)

**③ 임대기간 종료시 원상회복**

국유재산법 등 별도로 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대토지에 공장이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 조건을 붙여야 한다. (2020년 시행예정)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Q1. 외국인투자 합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인투자의 투자 없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증자를 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 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입주기업이 사업계획 이행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율 10% 이상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Q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 이행기간은 얼마인가?**

입주기업의 사업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Q3. 장기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입주한도를 충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계속하여 입주가 가능한가? 또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장기차관의 만기 상환은 가능하나,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입주한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현실임대료인 취득가액의 5%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단지형 외국인지역 지정 현황: 부록 참조

**Q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후 입주기업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고용인원)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5년이다.

**Q5.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 지원 혜택은 없다.



## 현금지원

현금지원이란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또는 소재부품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R&D센터 또는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사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장기차관에 의한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1.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 공정기술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①항제1호에 따른 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 2.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증설

※ 관련규정 : 「산업발전법」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2019.7.26 「첨단산업 및 제품의 범위」 별표1(2020년 시행예정)

#### 3. 소재·부품

섬유, 펄프, 화학, 의약,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등

※ 관련규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 4. 고용창출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2

### 5.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사업과(2020년 시행예정)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 채용하여 연구시설 신·증설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①항제4호

### 6.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의 해외법인의 생산·판매·물류·인사 등 핵심 기능의 지원·조정을 하는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해외모기업 매출액 3조 원 이상, 외국인투자지분율 50% 이상, 핵심기능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 7.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 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규정 :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 지원항목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금 분담비율

항목	수도권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30:70	60:4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50

## 현금지원 신청

KOTRA 투자거점무역관, Invest KOREA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에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Invest KOREA의 외투현금지원센터와 PM은 요건 충족여부, 신청 및 심사절차 등을 상담·지원한다.

## INFORMATION

### Invest KOREA 투자전략팀(외투현금지원센터)의 역할 현금지원 관련 문의 02-3460-7852, 7834

#### 1. 상담

외투현금지원센터에서는 외국투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제도와 관련된 지원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상담·지원한다.

#### 2. 수요조사

현금지원을 희망하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기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별, 시기별 현금 지원의 규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 3. 평가 및 심사

현금지원의 평가 및 한도산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현금지원계약서 작성 시 검토 등을 지원한다.

#### 4. 협상담당자 및 PM 지정

외국투자자는 현금지원을 신청하기 전·후에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 또는 협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상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KOTRA는 PM을 지정하여 신청인을 지원한다.



현금지원절차



필요 서류

현금지원 신청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3서식)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각 5부 /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 (중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도 포함)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 사본 5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신고한 경우)

PM으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 1. 신청서류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현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 첨부서류와 PM의 현금지원과 관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 2. 지원여부 심사

현금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상관계자인 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Invest KOREA의 PM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기술이전효과(기술성),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산업성), 투자의 생존가능성(재무성)을 평가한다.

### 3. 지원한도 평가

협상관계자 및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이외의 투자가능성,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의 질, 입지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한도 내에서 협상담당자가 외국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필요 서류

##### 투자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①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 ② 총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 ③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 ④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 및 집행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 ⑤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 ⑥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인 사업관계 등 포함)
  - ⑦ 국내외 시장의 공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 ⑧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 ⑨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 ⑩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기업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 ⑪ 한국과 대체투자국 비교 시장·단점 포함
  - ⑫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 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 ⑬ 기타 필요한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 관련규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제④항, 제⑤항

#### 4. 협상 및 지원금 결정

현금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이후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 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된다. 다만, 입지 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5. 지급방법

현금지원금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약체결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분할 지급시기

구분	시기
토지 매입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
토지 임대료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기타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9조

## 6. 계약체결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현금지원 계약기간, 현금 지원금의 지급 방법, 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In Detail

#### 1.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 고용계획, 무역수지 또는 서비스 수지 개선효과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신청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책무

신청인은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자산을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복구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자산을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 신청인은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분야는 결산보고서 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3. 지원금 감액 또는 환수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 한다.(2020년 시행 예정)

## INFORMATION

### 사전심사제도

KOTRA 사장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통한 현금지원 협상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지방자치단체가 확장된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포함)과 협의한 후 외국인투자 위원회에 상정한다.

- 협상안에는 현금지원의 승인 여부, 현금지원의 최소 요건 및 현금지원 금액의 최소·최대 금액(또는 비율),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 등이 포함된다.

협상안이 승인되면 협상담당자는 1년 내에 외국투자자와 협상(1년 범위 내 기한 연장 가능)을 완료하고 현금 지원을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현금 지원 신청을 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현금 지원계약을 체결한다.

- 현금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 중 국내외 시장동향, 향후 5년간 추정 재무 제표, PM 의견서는 제출 생략한다.

※ 관련규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제16조



### Q1.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 지원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 지원 계약기간 까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 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8조제⑦항



## R&D센터 특례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정부는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미래먹거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연구개발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부서의 신고를 통하여 연구인력, 조세, 관세,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을 통하여 연구인력, 조세, 금융 등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시설이 있을 경우 현금지원, 조세지원, 입지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 시설은 기업투자(D-8)사증을 받을 수 있다.

### 기업부설연구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40,693개, 연구개발전담부서 27,787개 (2019년 9월 현재)

※ 관련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1. 신고방법

연구소 / 전담부서를 설립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신고 절차



처리기간: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기업 측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의처 (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

KOITA 연구소인정팀 02-3460-9141~46, 9013~17

## 2. 인정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는 2명)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소재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 무관하게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In Detail

#### 연구소 요건 충족 기준

##### ①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 규모에 관련 없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학위 이상보유자로서, 연구개발 활동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하거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인정 기준을 참조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③항

##### ②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 등은 연구공간에 있어야 한다.

### 3. 지원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등록한 기업은 조세, 관세, 인력, 자금, 판로,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 조세 및 관세지원

지원항목	관련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별표6)
	신성장동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별표7)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①항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 ② 자금지원

사업 부처	주요 내용	관련사업 정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술개발사업 지원	한국연구재단 <a href="http://www.nrf.re.kr">www.nrf.re.kr</a> 한국과학창의재단 <a href="http://www.kofac.re.kr">www.kofac.re.k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 href="http://www.nipa.kr">www.nipa.kr</a>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등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 href="http://www.ariat.or.kr">www.ariat.or.k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a href="http://www.keit.re.kr">www.keit.re.kr</a>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 href="http://www.tipa.or.kr">www.tipa.or.kr</a> 중소벤처기업부 <a href="http://www.smtech.go.kr">www.smtech.go.kr</a>



**③ 인력지원**

지원항목	관련 내용	문의처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대체복무제도	KOITA 02-3460-9124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채용, 파견)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지원	KOITA 02-3460-9082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지원	KIAT 02-6009-3512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자산형성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357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인턴프로그램 경비지원	정보산업연합회 02-2132-0726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전문인력양성 지원금	KIAT 02-6009-4375
해외고급과학자 초빙(Brain Pool) 사업	유치경비, 연구지원비	연구재단 042-869-6377
고용추천서(Gold Card) 제도	해외기술인재 고용추천장	KOTRA 02-3460-7338
글로벌인재 발굴서비스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KOTRA 02-3460-7337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채용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1350
이공계인력중개센터	이공계 인력 중개	KOITA 02-3460-9033

**④ 기술지원**

사업 부처	주요 내용	관련사업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바우처사업(소재개발지원)	www.신뢰성바우처.org
	K-Global 프로젝트	k-global@nipa.kr www.nipa.kr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www.koita.or.kr
	학연 공동 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www.smbacon.go.kr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www.exportcenter.go.kr
특허청	IP-R&D 전략 지원사업	http://biz.kista.re.kr/ipro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www.kipa.org

##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또는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이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행 운영기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등록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현황 : 연구개발업 821개, 연구개발지원업 710개 (2019년 8월 현재)

※ 관련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5조

구분	사업 내용	신고대상 업종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위탁연구)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농학 연구개발업 -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 그 밖에 자연과학연구개발업 -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지원업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대여 및 거래, 기술경영 및 기술전략,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 물질성분 검사업 -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출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지원제도

### 1. 신고방법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신고절차



☞ 처리기한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의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TEL 02-540-4172 / FAX 02-540-4132

이메일 : [korsia@rndservice.or.kr](mailto:korsia@rndservice.or.kr) / 홈페이지 : [www.rndservice.or.kr](http://www.rndservice.or.kr)

### 2. 인정요건

인정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매출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인적요건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이공계인력 2명 이상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해당 없음
매출액요건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 3. 지원 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등록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연구인력 지원, 조세지원, 금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① 인력지원

지원항목	관련 내용	문의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선정기업 지정 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병역법」 제36조, 제39조	KOITA 02-3460-9124

☞ 전문연구요원(병명특례) 선정기업 지정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한다.

#### ② 참여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국토 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 기초연구사업 - 우주기술 개발사업 -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 개발사업	-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중소기업 용·복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ESP (기술전문기업)	- 건설기술 연구사업 - 플랜트 연구사업 -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 - 철도기술 연구사업 - 항공안전기술 연구사업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첨단생산 기술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인건비 현금 계상)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내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③ 금금지원

지원항목	내용
기술보증제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성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기술평가제도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을 표시하는 제도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220

**④ 조세지원**

지원항목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확인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중소기업 특례 적용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설비투자 시 감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및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위해 출연금 등 자산을 받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상당금액을 익금불산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 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4. 처리 절차**

연구개발서비스업 설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후에 현지 확인이 진행되며 회사와 관련된 추가서류를 제출한다.

# FAQ

## Q1. 연구만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만 있고 다른 부서는 없는 상황이며 다른 업무(관리 등)는 대표이사가 혼자 담당하고 있는 경우 연구전담부서 신청이 가능한가?

신정기업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이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다른 부서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 및 상시종업원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자이어야 한다.

## Q2. 경제동향 등에 대한 연구활동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시장조사, 경제동향연구 등의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활동은 인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종 산출물이 과학기술진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 내 전산시스템 운용 등 일상 반복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이나 제품의 시험단계가 끝나고 상업적 생산단계로 바뀐 경우 등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다.

## Q3.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방법과 혜택의 차이는 무엇인가?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록의 물적요건은 동일하나 인적요건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의 세제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일하나,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다.

## Q4.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 이외의 시간에 영업지원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3년 이내의 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 기업의 대표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

※ 관련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경영지원  
인큐베이팅  
교육훈련  
채용  
출입국

## 인큐베이팅

KOTRA가 운영하는 IKP(Invest KOREA Plaza)는 외국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 시설로서 초기 투자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 행정지원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층별 비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국투자가 전용 사무실,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상담실, 영상회의실, 수면·샤워실 등 제반시설을 제공하여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고용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유력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신고 30만 달러 이상인 투자기업은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하다.

### IKP 시설 현황

건물 전경



로비 및 카페테리아



회의실(80석)



임대 사무실(5인)



임대사무실(2인)



비즈니스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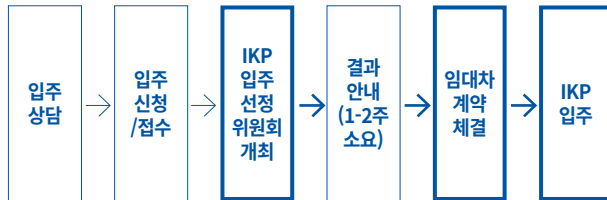


출처 : Invest KOREA 홈페이지 / 입주사무실 규모 : 21.82 m<sup>2</sup> ~ 32.4 m<sup>2</sup>(2인실), 50.24 m<sup>2</sup>(5인실) 상황에 따라 크기 및 입주가능 공간은 변할 수 있다.

## IKP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

구분	주요내용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 최소 투자(신고)금액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주 조건 등을 협의 후 내부 심사 * 해외무역관 및 외국인투자유치 전담PM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가점 부여
계약기간	- 외국인투자기업 : 2년, 전략투자유치 분야는 추가연장이 가능함
임대료	- 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주보증금 : 6개월 임대료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사무실 및 비즈니스센터 활용지원 - 입주 후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 신청 절차



### IKP 입주 상담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전화상담 : 02-3497-1003 이메일 : [ikp@kotra.or.kr](mailto:ikp@kotra.or.kr)



##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7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1. 요건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 후 5년 이내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 2. 지원규모

정부는 1인당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월 50만 원 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 1인당 6개월간 최대 6백만 원까지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

(중앙정부 3백만 원, 지방자치단체 3백만 원)

### 3.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교육훈련보조금	내국인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만큼 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다음 연도에 신청
고용보조금	신규 공장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10~50만 원 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만큼 보조금 지원	신규고용 다음 연도에 신청
	신규 연구시설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10~50만 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액만큼 보조금 지원	신규

## 채용지원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우수 청년 인재와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효율적인 만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KOTRA 등에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와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설명회가 있다.

### 1.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2006년부터 개최되어 온,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대표사업이다. 약 150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채용관(1:1 심층면접관, 채용상담관) 및 부대행사(채용설명회,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등)로 운영 된다.

### 2.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설명회

매년 11월 경 개최되는 최대의 외국인 투자를 위한 행사 주간 중에 개최되는 취업설명회로써, 채용을 위한 심층면접을 위주로 진행되며, 약 90개 내외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외에 상시 채용지원을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전용관이 운영되고 있다.

### 3. 기타지원제도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찾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민간취업포털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한 구인구직 취업 사이트인 워크넷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방의 산업단지내의 구인수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채용박람회 개최하고 산업단지 일자리 키콕스잡(KICOXJOB)을 통해 고용을 지원한다.

### 주요 채용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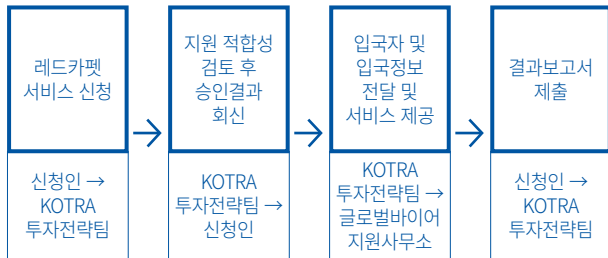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관	KOTRA	한국산업단지 공단	한국고용정보원	KOITA
온라인	외투채용전용관	키콕스잡	워크넷	알앤디잡
오프라인 (박람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외국인투자기업 취업설명회	산업단지 채용박람회	각종 채용· 취업 박람회 (청년·희망·중장년 박람회 등)	채용박람회 및 이공계 취업설명회

### 출입국지원 레드카펫 서비스 (Red Carpet Service)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투자자에게 공항 도착 시점부터 출국 시점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서비스 및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되며, 기본서비스에는 입국 및 차량지원 서비스가,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전 일정 차량제공, 투자 상담주선, PM 수행지원 서비스가 포함된다. 게이트 픽업 및 CIQ\* 수속 지원은 KOTRA 글로벌바이어지원사무소가 소재하는 인천공항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출국 시 수속 지원은 없다.

☞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 신청절차



☞ 신청자 : KOTRA 무역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투자유치 PM 등  
문의처 : KOTRA 투자전략팀 02-3460-3226

## INFORMATION

우수인력 구인은 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이다. 정부 또는 KOTRA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세부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 ① KOTRA 외투기업채용지원팀 02-3460-7846, 7877, 7829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 [www.jobfairfic.org](http://www.jobfairfic.org)  
외국인투자기업채용전용관 [www.jobkorea.co.kr/theme/kotra?rv=1](http://www.jobkorea.co.kr/theme/kotra?rv=1)
- ② KOITA 기술인력지원팀 02-3460-9121  
이공계인력중개센터 [www.ndjob.or.kr](http://www.ndjob.or.kr)
- ③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 ④ 산업단지 일자리지원센터 : 11개 지역 26개 지원센터 운영  
대표 070-8895-7000 키콕스잡 [www.cluster.or.kr/kicoxjob](http://www.cluster.or.kr/kicoxjob)

# PRACTICE 사업운영 및 실전



BUSINESS IN KORE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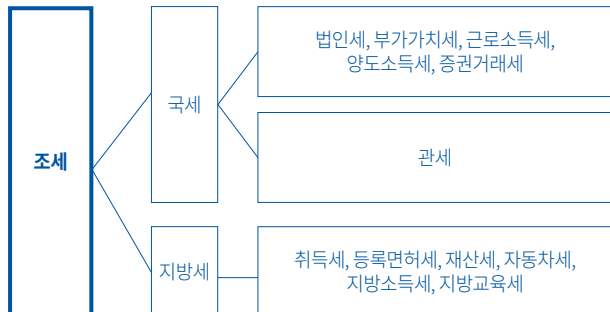
1

## 조세제도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경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등 특수 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관련 이전자격세제와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자 관련된 주요세금의 종류



## 국세

### 1.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사제 단법인 등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고대상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 ②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 ×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 초과금액 × 22%)
3천억 원 초과	655억 8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금액 × 25%)

☞ 법인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총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총매입액×세율)을 차감하는 형태로 과세된다.

### ② 사업연도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한다. 단, 예정신고기간이 있어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다.

	1기		2기	
대상기간	01.01-03.31	04.01-06.30	07.01-09.30	10.01-12.31
신고 및 납부기간	04.01-04.25	07.01-07.25	10.01-10.25	익년 01.01-01.25

### 세율

과세표준	세율
국내매출	10%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	0%

### In Detail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부동산도 매출액의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http://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발급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여된다.

### 3. 근로소득세(근로자)

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여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된다.

####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근로로 받은 대가(급여, 상여)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 후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매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한다.

#### ② 신고기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60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60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억 7,46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42%)

☞ 소득세 납부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 In Detail

###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내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

금으로 계산된 것 제외)  
 위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상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납세소득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들은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5%를 허용하고 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0조

### 4. 양도소득세(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도, 교환 혹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 책에서는 외국투자가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다루기로 한다. 양도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도 있다.

####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 ②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세율

#####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30%
-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6천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5%)

### ㉞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과세표준의 10%
-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 과세표준의 20%

## In Detail

### 대주주의 범위

- 2020.3.31.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5억 원 이상
- 2021.3.31.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억 원 이상
- 2021.4.1.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3억 원 이상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 5.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양도자이며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 ②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비상장주식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 ③ 세율

증권거래세율(비상장 주식 등)은 0.5%(2020년 4월 1일부터 0.45%)이다.

## INFORMATION

### 국세청 업무 상담

국세청 일반상담 : 126 (평일) 09:00-18:00

영문상담 : 1588-0560

## 지방세

### 1.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세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함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취득 및 각종등기·등록 등에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까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함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승용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로 구분함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정기분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정기분 : 제1기(6.16~6.30) / 제2기(12.16~12.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시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출처: 2019 지방세 길라잡이,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세율은 부록 참고

## 2. 감면 대상

### ① 지방조례에 의한 감면

#### ㉠ 외국인투자자유지 관련 지방세 감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할 수 있다.

####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경감한다.

#### ㉢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

규정	주요내용	세목(감면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100		100
제46조제①항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감면(대기업 과밀억제권 내 제외)	35		35
제46조제②항	기업부설연구소(대기업 과밀억제권 외)감면	35		35
제46조제③항	기업부설연구소	60		50
제58조제①항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
제58조제②항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감면	중과제외		중과제외
제58조제③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50		50(3년)
제58조제④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37.5		37.5
제58조의2제①항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감면(중전취득세 감면을 1년 유예)	35		37.5
제58조의2제②항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50		37.5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75	100	100/50
제71조제①항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35

제71조제②항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50		35
제75조의2제①항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2제①항2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5조의2제①항3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2제①항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50		50
제78조제④항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신축)	50		35-75
제78조제④항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대수선)	25		
제79조제①,②항	법인 지방이전 감면	100	100	100/50
제80조제①항	공장 지방이전 감면	100		100/50

## INFORMATION

### 지방세 ONE CALL 상담센터

전화번호: 1577-5700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부서로 연결)

홈페이지: [www.wetax.go.kr](http://www.wetax.go.kr) 

##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는 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시 정상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 회피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 1. 정상가격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다음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
|-----------------|-----------------------|
|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④ 이익분할방법              |
| ② 재판매가격방법       |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
| ③ 원가가산방법        | ⑥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조 참조

## 2.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부과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In Detail

### 국제거래 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점

- ①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불성실 과태료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서 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국외 특수관계인별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2월 7일 이전분 :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 ※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①항
-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료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국외 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

※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①항

## 과소자본과세제도

과소자본이란 출자와 차입의 과실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조세부담을 덜고자 자금조달 시 인위적으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한다.

### 1. 과소자본의 개념

법인소득의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으로 공제되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 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자 대신 차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차입금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부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과소자본과세제도(Thin Capitalization Rule : Thin-Cap)이라 한다.

### 2. 과소자본세제 적용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In Detail

### 국외지배주주지급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국의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을 참조

## 조세조약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세조약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 이론에 따라 국내세법과의 관계가 설정되며, 아래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다.

## 1. 조세조약의 특성 및 주요기능

대한민국의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국내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 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를 그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

## 2. 조세조약의 지위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하지만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상 규정 없이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없고 국내세법에서 정한 조세부담액 이상으로 다른 계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INFORMATION

### 조세조약 체결국가(93개국)

가봉공화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왕국,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세르비아공화국,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공화국,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케냐공화국, 콜롬비아공화국,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공화국,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공화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공화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 국가별 조세조약 내용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

※ 유의사항: 조세조약은 개정사항이 본문에 반영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반영되므로 조세조약을 꼭 끝까지 확인해서 개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세율)

제약국가	제한세율		
	이자	배당	사용료
가봉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그리스	8%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네덜란드	7년 초과 : 10% 기타 : 15%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기타 : 10% 저작권 : 15%
네팔	10%	25%이상 법인 : 5% 10%이상 법인 : 10% / 기타 : 15%	15%
노르웨이	15%	15%	기타 : 10% 저작권 : 15%
뉴질랜드	10%	15%	10%
덴마크	15%	15%	산업적투자 : 10% 기타 : 15%
독일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장비사용 : 2% 기타 : 10%
라오스	10%	10%이상 법인 : 10% 기타 : 15%	5%
라트비아	10%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산업적투자 : 5% 기타 : 10%
러시아	면제	30%이상 법인 : 5% 기타 : 10%	5%
루마니아	10%	25%이상 법인 : 7% 기타 : 10%	특허권등 : 7% 기타 : 10% / 수수료: 10%
룩셈부르크	은행 : 5% 기타 : 10%	10%이상 법인 : 10% 기타 : 15%	산업상정보 : 5% 기타 : 10%
리투아니아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산업상정보 : 5% 기타 : 10%
말레이시아	15%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기타 : 10% 저작권 : 15%, 10%
멕시코	은행 : 5% 기타 : 15%	10%이상 법인 : 0% 기타 : 15%	사용료 : 10% 기타 : 15%
모로코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저작권 등 : 5% 기타 : 10%
몰타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0%
몽골	5%	5%	10%
미국	12%	10%이상 법인 : 10% 기타 : 15%	저작권 : 10% 기타 : 15%
미얀마	10%	10%	정보대가 : 10% 기타 : 15%

바레인	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방글라데시	10%	10%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베네수엘라	은행 : 5% 일반 : 10%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장비대가 : 5% 기타 : 10%
베트남	10%	10%	특허권 등 : 5% 기타 : 15%
벨라루스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벨기에	10%	15%	10%
불가리아	10%	15%이상 법인 : 5% 기타 : 10%	5%
브라질	7년 차관 : 10% 기타 : 15%	10%	상표권 : 25% 기타 : 10%
브루나이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조지아	10%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체코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카자흐스탄	10%	10%이상 법인 : 5% 기타 : 15%	산업적장비 : 2% 기타 : 10%
캐나다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쿠웨이트	5%	5%	15%
케냐	12%	25%이상 법인 : 8% 기타 : 10%	10%
타지키스탄	8%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터키	2년초과 : 10% 기타 : 15%	25% 이상 법인 : 15% 기타 : 20%	10%
튀니지	12%	15%	15%
파키스탄	12.5%	20%이상 법인 : 10% 기타 : 12.5%	10%
페루	15%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폴란드	10%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5%
피지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필리핀	공모채 : 10% 기타 : 15%	25%이상 법인 : 10% 기타 : 25%	10%, 15%
호주	15%	15%	15%

사우디아라비아	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장비사용 : 5% 기타 : 10%
세르비아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저작권 : 5% 기타 : 10%
스리랑카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스위스	은행 : 5% 기타 :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스웨덴	7년 차관 : 10% 기타 : 15%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기타 : 10% 저작권 : 15%
스페인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슬로바키아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저작권: 0% 기타 : 10%
슬로베니아	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싱가폴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5%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0%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0%
아이슬란드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아일랜드	0%	10%이상 법인 : 10% 기타 : 15%	0%
아제르바이잔	10%	7%	산업적투자 : 5% 기타 : 10%
알바니아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알제리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장비사용: 2% 기타 : 10%
에스토니아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장비사용 : 5% 기타 : 10%
에티오피아	7.5%	25%이상 법인 : 5% 기타 : 8%	5%
에콰도르	12%	10%이 법인 : 5% 기타 : 10%	장비사용 : 5% 기타 : 12%
영국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장비사용 : 2% 기타 : 10%
오만	5%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8%
오스트리아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장비사용 : 2% 기타 : 10%
요르단	10%	10%	10%
우루과이	10%	20%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우즈베키스탄	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장비대가 : 2% 기타 : 5%

우크라이나	5%	20%이상 법인 : 5% 기타 : 15%	5%
이스라엘	은행 : 7.5% 기타 : 10%	10%이상 법인 : 5%,10% 기타 : 15%	장비사용 : 2% 기타 : 5%
이집트	3년 초과 : 10% 기타 : 15%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5%
이탈리아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인도	10%	15%	10%
인도네시아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5%
일본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중국	1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칠레	은행 : 4% 거래소채권 : 5% 기타 : 1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장비대가 : 2% 기타 : 10%
카타르	10%	10%	5%
콜롬비아	10%	20%이상 법인 : 5% 기타 : 15%	10%
크로아티아	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0%
키르기스스탄	10%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5%,10%
태국	은행 : 10% 기타 : 15%	10%	소프트웨어 : 5% / 특허권 : 10% 산업적장비 : 15%
투르크메니스탄	10%	10%	10%
파나마	5%	25%이상 법인 : 5% 기타 : 15%	장비사용 : 3% 기타 : 10%
파푸아뉴기니	10%	15%	10%
포르투갈	15%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프랑스	10%	10%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핀란드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헝가리	0%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0%
홍콩	10%	25%이상 법인 : 10% 기타 : 15%	10%

\*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www.nts.go.kr](http://www.nts.go.kr) 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 대만, 마카오는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이다.

\* 미국, 필리핀, 남아공은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 Q1. 접대비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은 2,400만 원)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총 수입금액 × 0.2%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100억 원 초과금액 × 0.1%)
500억 원 초과	6천만 원 + (500억 원 초과금액 × 0.03%)

접대비 증빙 : 1회 지출 접대비 중 1만 원을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임직원 기명식 법인카드 포함) 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이다.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경조사비의 경우 1회 지출액 20만 원 한도에서 청첩장 등이 적격증빙이 된다.

### Q2.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① 지급금액 × 10%
- ② (수입금액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 20%

### Q3.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을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 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국일46017-483)

### Q4. 국내사업장이 지배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였을 경우에 과소자본과세의 적용을 받는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과소자본과세에서 제외된다. (국일46017-483)



## 통관 및 자본재 도입

### 통관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 1. 통관절차

##### ① 수입통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수입신고 시기 : 선박(항공기)의 출항 전, 입항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다.

##### ② 수입신고서류

수입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한다. 다만, 의뢰받은 신고인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③ 수입신고 처리

수입신고서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수리된다. 다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수입물품검사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비용은 수입업체별 법규 준수도, 검사적발 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체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에 의할 수 있다. 수입물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한다.

### ⑤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 필요 서류

### 수입신고 시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 신고 시 제출) /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선하증권(B/L)부분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포장명세서 {포장박스별 품명(규격) · 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검사 · 검역 · 허가 · 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전산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합의세율적용승인(신청)서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 · 치어의 번식 · 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수입통관 절차



## INFORMATION

### 원산지 기준을 및 관세율 검색 방법

(FTA 협정국가별 원산지 기준을)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http://www.customs.go.kr>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 HS코드 검색

(협정국가별 HS 코드 관세율)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http://www.customs.go.kr>

FTA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 HS코드 검색



## 2. 인터넷 통관포탈(유니패스)

유니패스(UNI·PASS)는 개인과 기업이 수출 또는 수입할 때 필요한 세관신고, 세금납부, 요건신청 등 모든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유니패스 : [unipass.customs.go.kr](http://unipass.customs.go.kr) 

### ① 주요 서비스

유니패스의 주요 서비스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정보조회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부여가 있다.

서비스	내용
전자신고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등 신고업무를 수행 후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통관서류 출력이 가능하다.
전자납부	수입신고 후 관세 등 세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처리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조회	관세행정 업무에 필요한 통관정보, 법규준수도, 통관부호 등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주고 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 ② 신청절차

유니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공인인증기관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취득한 후, 유니패스의 사용자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하면 세관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후 이용승인을 한다.

※ 관련규정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25, 2018.7.18.)

## INFORMATION

### 유니패스 업무 상담

####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

전화 : 1544-1285

- 유니패스 전산업무(수출입통관, 화물, 환급 등)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이용안내

#### 관세행정 업무

전화: 125 (일반관세상담: 20, 외국인: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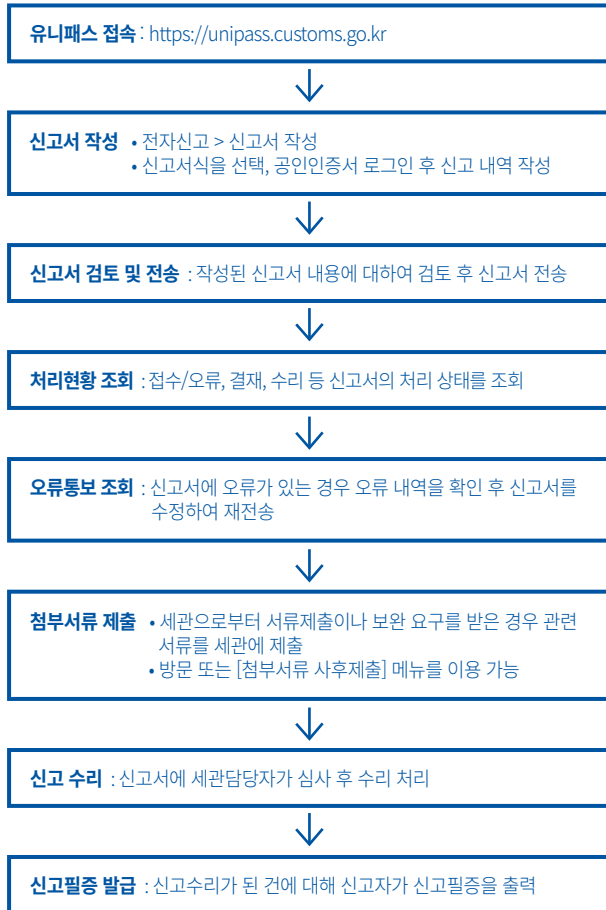
- 관세업무,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 관세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

#### ④ 이용방법

유니패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웹화면 입력방식과 신청인의 PC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건을 일괄 유니패스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신청 건이 많은 경우 활용도가 높다.

사용 가능 웹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

#### 업무처리절차



## 관세납부와 환급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 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 1. 관세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로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부과지도 있다. 관세는 금융기관(국고수납)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서를 조회하여 이체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INFORMATION

### 신용카드결제 문의처: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전화번호: 1577-5500

<http://cardrotax.or.kr>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 2. 관세감면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구분된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과 국가 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감면될 수 있다.

### 3.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징수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때 다시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때 원재료의 가공 및 수출은 원재료 수입으로부터 2년 내 이루어져야하며 환급신청 기한은 수출 시점으로부터 2년이다.

## 자본재 도입

외국투자자가 도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거나 현물출자를 위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를 검토·확인한 후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본재 도입절차



### 1.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후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본재 도입에 따른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토·확인 대상 자본재는 아래와 같다.

-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자본재
-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 자본재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8호

### 2. 확인신청 기한

자본재 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현물출자 완료 확인

출자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파견 관세청 투자협력관에게 현물출자 완료 확인을 받은 후에 회사설립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한다.

#### 필요 서류

#####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시

신청서 3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물품매도 약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3조

#### 필요 서류

##### 현물출자 완료 확인 시

신청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 시 생략 가능)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 및 제②항



## 인사·노무

유능한 인력의 채용과 원만한 노사관계는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의 관건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법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근로자를 채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해고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4대보험,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개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1. 표시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로 장소, 업무, 휴가, 퇴직금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 2. 수습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한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 관련규정: 「최저임금법」 제5조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In Detail

#### 주의사항(채용 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개정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채용 시 구직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아니 된다. (2019.7.17. 시행)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고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다.

### 1.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 지급시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주 이상 귀향)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 1. 연장 근로의 한도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1주간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의 기업,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위와 같이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3. 유연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분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별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기간 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식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방식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



## 휴일 및 휴가

### 1. 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2. 공휴일

공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2018년 6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 ~ 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3. 법정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4대 보험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 요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보수총액의 0.8%	없음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3.335%
사용자	보수총액의 0.8%	업종별 상이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3.33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10.25%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자가 보수총액의 0.25~0.85% 범위에서 지급한다.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http://moel.go.kr) 참조

### In Detail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외국인은 일정요건 충족 시 가입제외 신청 가능)과 산재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라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다.

## 퇴직급여

### 1. 퇴직

#### ① 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사용증명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2. 퇴직급여제도

### ① 종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 ②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 ③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용자는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근속연수)을 곱한 값으로 한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In Detail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제11조

## 해고

### 1. 해고의 정당성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① **징계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어 징계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를 말한다. 징계목적, 사업성격, 근로자의 업무, 비위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 **경영상 해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요건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근로자 측에 50일 전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다.

### 2. 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4. 해고시기의 제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된다.

## 취업규칙

###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 2.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

## 3. 취업규칙의 변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모성보호

### 1. 출산 전·후 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일·가정 양립 지원

### 1.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3

## 안전과 보건

###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한 경우 혹은 그 작업내용 변경 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 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판매업무 직접종사자를 제외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정규직

### 1. 기간제 근로자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하여 차별할 수 없다.

### 2.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업 사용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파견 대상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근로자 보호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조치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장제2조 (2019.7.16. 시행)

## 집단적 노사관계

###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그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하여 동종 산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다.

### 2.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통해 「헌법」 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등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 조직을 지배·개입·원조하는 등의 행위, 사용자 규정위반 사항을 신고·증언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3. 노동위원회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권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있다.

※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의2, 제22조~제26조

### 4. 노사협의제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 INFORMATION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 1.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

#### 2. 국가유공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9)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86조

### 참고자료 『외국인투자기업 노사실무 2020』 (KOTRA)





### Q1.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어 자질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Q2. 2020년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1년 월 평균 주간은 4.345주 (365일 ÷ 7일 ÷ 12월)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하면 주당 48시간 근무로 계산할 수 있다. 월 평균 주간에 주 48시간을 곱하면 208.56, 즉 209시간으로 산정된다. (4.345 X 48 = 208.56)

### Q3.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 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근로시간 위반인가?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일 7시간씩 3일간 21시간을 연장근무 하였으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주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Q4.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법정 휴일인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정하고 있다.

### Q5.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여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나,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주의 기산점은 노사간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 Q6.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Q7.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경우
- 체류자격이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Q8.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 사증 소지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⑤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Q9.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www.nps.or.kr](http://www.nps.or.kr))

-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019.5.1. 기준 18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페루
-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Q10. 해고예고 통보 시 법정 해고예고기간인 30일에서 5일이 부족할 경우 5일분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예고기간이 1일 이라도 부족하면 전체법정기간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대한민국은 세계 4위의 지식재산권 출원 국가이자 세계 5위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출원 국가로 특허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나 국내에서는 산업재산권이 주류를 이룬다.

1999년 PCT 국제출원 국제조사기관이자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획득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산업재산권 현황 및 경쟁력

####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단위: 건)

구분	2018년
특허권	209,992
실용신안권	6,232
상표권	200,341
디자인권	63,680

출처: 특허청 2018 지식산업백서

#### 1.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대한민국은 IP5국간의 PCT 협력심사를 시행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 동유럽 국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신설 및 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UAE 및 사우디 등과 IP 선진화지원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2019년 IP5 청장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논의를 주도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 2. 대한민국의 경쟁력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세계지식재산지표의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출원에 있어서 2017년에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2018년도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 건)

순위	구분	연도별 출원 추이		
		2015	2016	2017
1	중국	5,675	7,159	9,446
2	미국	1,003	1,042	1,098
3	일본	501	517	545
4	대한민국	476	464	455
5	독일	161	162	164

### 주요국 PCT 국제특허 출원 현황

(단위 : 건)

순위	구분	연도별 출원 추이		
		2016	2017	2018
1	미국	56,595	56,624	55,981
2	중국	43,168	48,882	53,340
3	일본	45,239	48,208	49,703
4	독일	18,315	18,982	19,750
5	대한민국	15,560	15,763	17,017

## 3. 주요국의 심사처리기간

대한민국의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2017년도에 미국의 16.3개월보다 짧고 일본의 10.4개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위 : 개월)

구분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미국	16.3	13.3	2.7
일본	10.4	4.9	5.0
대한민국	9.3	6.1	4.9

#### 4. GDP 및 인구대비 내국인 출원

대한민국은 GDP 및 인구대비 내국인 출원건수 통계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전체 출원건수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4위에 올랐던 한국이 GDP 및 인구대비 출원건수에서 출원 강국들을 크게 앞질러 한국의 지식재산권 출원의 우수함이 드러났다.

(2017년 기준)

GDP 1천억 불당 출원건수	인구 1백만 명당 출원건수
대한민국 8,601	대한민국 3,091
중국 5,869	일본 2,053
일본 5,264	스위스 1,018
독일 1,961	미국 902
미국 1,664	독일 887

출처 : 특허청 2018 지식산업백서

## 지식재산제도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재산권만을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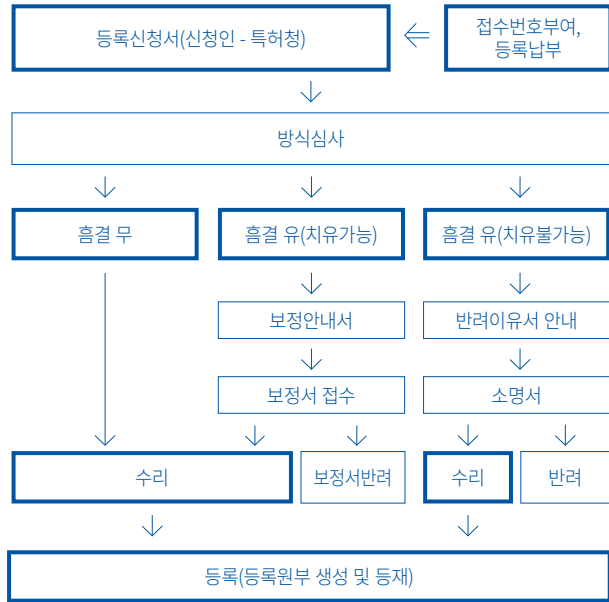
###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특허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기타 특허권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특허청에 비치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원부란 특허청장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 등록 시 존속기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등록신청 절차



### 2. 특허권

특허권 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대한민국은 특허출원에 있어 최초 출원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특허출원 주요절차



- ①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기간의 준수, 증명서 첨부, 수수료 납부 등 절차상의 흡결을 점검하는 심사이다.
- ②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고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 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심사로서 정보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한다.
- ④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 ⑤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다.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한다.

### 특허 출원 방법

구분	전자출원		서면출원	
	온라인	우편	방문	
내용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우편 제출	직접 방문 제출	
접수처	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정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접수 시간	월-토는 24시간 가능하며 그 이외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09:00-21:00까지 출원이 가능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PCT 국제출원은 특허청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	09:00-18:00(동절기, 토요일 09:00-13:00)	

## INFORMATION

### 특허의 전자출원과 정보검색

1. 특허전자출원 “특허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전자출원 서비스로 출원부터 등록, 수수료 납부까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patent.go.kr](http://patent.go.kr) \*고객상담센터 : 1544-8080

2.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KIPI)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특허검색 서비스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국내 지식재산 정보와 해외특허 정보에 대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다.

[kipris.or.kr](http://kipris.or.kr) \*



### 3. 실용신안권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고안이다. 따라서 실용신안이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거쳐 실용신안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후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 4.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모든 디자인에 대해 등록자가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기 출원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출원을 희망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시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받아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

### 5. 상표권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원할 시 10년마다 갱신등록 출원이 필요하다.

## 특허청의 주요서비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정책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된 현재, 한국의 특허청은 신뢰받는 심사, 심판 서비스 제공, 강한 특허 창출지원과 보호강화, 우수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에 더해 관련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1.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 및 심사품질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로 구성된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히 특허권을 획득해 독점적 지위를 선점할 수도 있고, 늦은심사를 통해 충분한 사업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어 필요에 따라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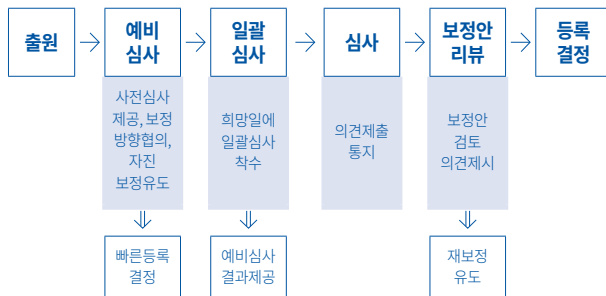
- 우선심사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우선심사 출원의 처리기간 조정

- 일반심사 : 평균 심사소요기간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
- 늦은심사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을 위해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

## 2. 특허심사 3.0

기존의 일방향(One-Way) 서비스에서 탈피, 특허심사 전 과정에 걸쳐 출원인과 심사관이 소통하여 고품질 특허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심사 패러다임으로서 예비심사, 일괄심사, 보정안 리뷰의 단계가 있다.

### 심사단계별 주요제도



## 3. 예비심사

심사관의 사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예비심사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공식 심사 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특허권 부여가 가능하다.

## 4. 일괄심사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여러 출원을 동시에 심사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전략에 따라 제품 출시 시기 등에 맞추어 일괄적인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고, 국가적으로는 R&D 결과물의 사업화, 기술이전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

## 5. 보정안 리뷰

출원인이 통지받은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은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 등을 최종 보정서 제출 전에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특허결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다.

## 6.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특허청 홈페이지에 “Cyber Bulletin”을 개설하여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선출원제도로 인하여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도 방어목적의 출원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권을 확보할 의도는 없으나 타인의 특허권행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Cyber Bulletin”에 그 기술내용을 게재하면 특허청에서 기술내용과 일자를 공증해주고 선행기술로 인정해줌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행사로 인한 사업상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In Detail

####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경우

출원 절차를 밟아 특허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될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은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조정비용이 무료이다.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장점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다.

효과	내용
시간과 비용 절약	여러 개의 소송(민·형사)이나 심판을 한 번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정신청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회의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당사자가 WIN-WIN 할 수 있는 분쟁해결	소송과 달리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속성, 비공개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정보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유용하다.

## 1. 신청자격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산업재산권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 2. 신청대상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분쟁
- 직무발명 관련 분쟁
- 기술상 영업비밀 관련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료 및 취소여부, 권리확인심판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 INFORMATION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http://koipa.re.kr/adr/requst\\_2.html](http://koipa.re.kr/adr/requst_2.html)

문의 : 1670-9779(전화), 02-2183-5897(팩스), ip.adr@korea.kr(이메일)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

##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정부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및 교육,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업에게 맞는 사업을 검색하거나 분야별 지원시책을 조회할 수 있다.

특허청 [www.kipo.go.kr](http://www.kipo.go.kr)

(홈페이지 → 정책 / 업무 → 지원사업조회)

## 창출지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02-3459-2862
연구자 중심의 전략적 R&D-선기획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042-481-8248(특허청)
글로벌 IP 스타트업 육성		02-3459-2827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 사업		02-3287-4258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02-3287-4217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02-3475-8536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IP통합지원포털	02-3475-1325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https://biz.kista.re.kr/ippro	02-3475-8535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02-3287-4238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02-3287-4253
표준특허 창출 지원		02-3475-8553
생활발명코리아	한국여성발명협회 www.womanidea.net	02-538-2710
IP나래 프로그램, IP 디딤돌 프로그램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1661-1900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한국특허정보원 https://plus.kipris.or.kr	1544-8080

## 교육/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02-3459-2794, 2847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지원		02-3459-2804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02-3459-2927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02-3459-2815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	www.ipacademy.net	02-3459-2835
지식재산(IP) 스마트교육		02-3459-2788
특허지원 상담창구운영		02-3459-2822, 2838
지식재산 재능나눔		02-3459-2825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02-3475-851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www.pcc.or.kr	02-6006-4300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www.kipris.or.kr	02-569-2865
지식재산 서비스기업 채용 연계 교육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www.kaips.or.kr	02-3789-0607

## 활용지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특허캐펀드 조성 지원		02-3475-8524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02-3287-4392
제품단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IP통합지원포털 https://biz.kista.re.kr/ippro	02-3475-8514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지원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해외시장 수요 창출 지원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www.kaips.or.kr	02-3789-0606
지식재산 거래 지원		02-3459-288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한국발명진흥회 www.kipa.org	02-3459-2798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02-3459-2938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www.ipmarket.or.kr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02-3459-2942

## 보호지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제도		1670-1279(신고센터) 1279@koipa.re.kr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바꾸처		02-2183-5870
국제 지식재산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02-2183-5870
한류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02-2183-5880
지식재산권 분쟁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02-2483-589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02-2183-5890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코트라 해외지식재산권실 www.kotra.or.kr	02-3460-3359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1666-052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www.koipa.re.kr/adr	042-481-5925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www.patent.go.kr:7078	02-2183-5837 5837@koipa.re.kr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www.patent.go.kr:7078	042-481-5812/8324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행사지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02-3459-2748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48
대학창의발명대회	www.kipa.org	02-3459-28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www.koscc.net	02-3459-2950, 2796
발명의 날 행사		02-3459-2950
D2B 디자인페어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 www.d2bfair.or.kr	02-928-0582
IP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특허정보원 http://plus.kipris.or.kr	02-6915-1429, 1433
특허기술상	특허청 www.patent.go.kr	042-481-3461 (특허심사제도과)

### 기타지원

지원사업	수행기관	연락처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한국발명진흥회 www.ip-job.org	02-3459-2794, 2847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한국발명진흥회 www.ipcert.or.kr	02-3459-2861
수수료 감면제도		042-481-5083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특허청	042-481-5175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	www.patent.go.kr	042-481-5083
특허심판-국선대리인 제도	www.kipo.go.kr	042-481-8444
특허공제사업		042-481-5175, 5423

## INFORMATION

### IP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중소기업의 특허비용부담 완화,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 추진(안)

구분	현행(2018)	개선추진(안)
창출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25%)
	특허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25%)
활용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중소·중견(50%)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중소(25%)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중소·중견·대기업(25%)
보호	특허공제부금 세액공제	중소(10%)·중견(5%)



출처 : 201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2019.1)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1999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밀착형 투자 사후지원으로서, 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해결·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과 신규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 1. 위촉 및 기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와 처리,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및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2. 권한

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 현장방문 협조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③항, 제④항



## In Detail

### 1.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 기준

-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③항

### 2.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여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⑥항

## 고충처리기구와 흠닥터제도

### 1. 고충처리기구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이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제③항

### 2. 흠닥터 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기업별로 전담 흠닥터(고충처리전담요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분야 : 노무/인사, 조세 / 세무, 환경, 금융 / 외환, 관세 / 통관, 건설, IT& 지식재산권, 정주환경 등

### 3. 고충처리 절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의 고충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① 전문위원(홈닥터)의 전화, 현장방문,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접수된다
- ② 고충 접수 후 담당 전문위원은 해당 고충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기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접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③ 고충처리 관련 사항은 KOTRA 고객관리시스템(SCRM)에 입력·관리하며 종결 과정은 해당 기업에게 통보하며 지원을 완료한다.

출처 : 2018 외국인투자ombudsman 연차보고서(2019.4)

#### 고충처리 절차



## INFORMATION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연락처

전화 : 02-3497-1827

Fax : 02-3497-1699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7,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6층, 외국인 투자기업고충처리실

### 4. 외국인투자관련 규제정보 서비스

외국인투자ombudsman 사무소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규제 입법과정에서 소외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인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입안되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ombudsman 포털(규제정보 서비스) :

<http://ombudsman.kotra.or.kr>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정부입법	- 정부발의 규제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 전달
의원입법	- 의회 발의 규제 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의회 관계자 전달
규제개혁신문고 (기존규제 개선건의)	- 시행 중에 있는 기존 규제 관련 건의사항 수렴, 정부 소관부처 답변 전달

출처 : 201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2019.4)

### 1.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메인화면

영문규제포털(e.better.go.kr)

옴부즈만 포털(ombudsman.kotra.or.kr)



### 2. 규제정보서비스 뉴스레터

외국인투자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정보 내역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온라인에 게재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격주(월2회)로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있다.

## INFORMATION

### 규제정보서비스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포털(공지사항 → 메일링신청)에서 신청  
문의처 : 02-3497-1827, 이메일(oa\_info@kotra.or.kr)



### Q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어떤 기업이 이용할 수 있나?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 Q2.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 제기할 수 있나?

이메일, 전화, 방문, 팩스, 옴부즈만 홈페이지 Q&A 코너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의 전문위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 Q3. 고충처리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등 전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 Q4. 고충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무엇인가?

기업경영과 투자가의 생활환경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되나 기업간의 사적 분쟁, 개별 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국제 표준에 반하는 요구, 다른 기업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 Q5.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⑧항과 제⑨항에 의거하여 제기한 애로사항은 대외비로 처리되고 고충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 Q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고충 현안을 제기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불이익의 우려는 없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고충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혹은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익명처리가 가능하다.

### Q7. 제기된 애로의 처리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담당 전문위원(홈닥터)이 해당 기업과의 협의 내용 및 고충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요청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201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20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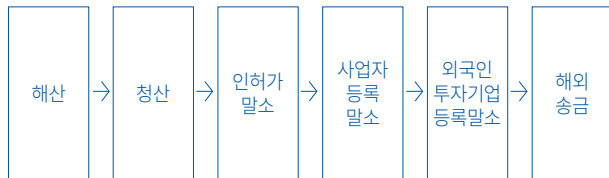


## 해산 및 청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해산, 청산,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격이 상실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채무를 청산한 후 잔여재산을 외국인투자가 지분율만큼 배분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별도의 청산인을 두어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 해산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법원 해산 및 청산 등기,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등의 단계를 거치며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법」 제535조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이 2개월이므로 2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는 없다.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다.

#### 주식회사 해산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
-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

#### 필요 서류

해산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해산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 1544-0773->2->3

## 청산(주식회사의 경우)

### 1. 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 3. 회사재산 조사보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4.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7.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

### 8.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9.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한다.

## 인허가 말소

영위 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하였던 시·군·구·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 필요 서류

##### 청산종결등기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유한회사 청산종결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 1544-0773->2->3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신고서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해산 또는 청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담당 126->2->2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 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한다.

##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①항 및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④항에 의하여 투자 잔여재산의 회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종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반납

\* 말소 대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 서류

#### 대외송금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8호의2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

공인회계사감사필 청산보고서 /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시군구 발행) / 예금잔액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산종결)

청산인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접수 대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INDIVIDUAL BUSINESS



# INDIVIDUAL BUSINESS

**개인**이 사업주체인 개인사업자의 설립절차는 법인등기를 제외하고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사업자와 동일하다. 다만, 세제, 회계, 재무관리 측면에서 법인사업자와 차이가 있고, D-8-3 또는 D-9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하다. 만일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말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잔여재산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소득	「소득세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당해 사업 연도에 증가된 순자산액에 대해 모두 과세
납세의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부담	각 사업 연도에 대한 사업소득 및 청산소득 등에 대해 납세의무 부담
세율	6~42%	10~25%
회계연도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기간이 정해짐	사업 연도를 정관에 임의로 정할 수 있음
장부작성 의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만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모든 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권리의무 주체	개인사업자가 영리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사업이 곧 사업주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 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무한책임을 부담함	출자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재산이용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바로 사업주 개인의 이익에 해당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의 소유에 해당됨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나 일정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 설립절차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설립 절차상의 차이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추게 되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 개인 외국인투자 흐름도



###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종합행정지원센터 2층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 시

###### 지분투자의 경우

- 신고서 2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투자자의 국적증명서(개인: 여권)
-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장기차관의 경우

- 신고서 2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 차관계약서(대주: 투자자 본인)

######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 신고 대리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자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INFORMATION

## 임시계좌 개설방법

국적증빙서류(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 3. 인허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In Detail

#### 인허가 항목 예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수입판매업, 식품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 수입판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건강식품 판매업, 건강식품 수입판매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주류수입업, 소규모맥주제조업, 직업소개업, 환전업 등

## 4. 사업자등록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여권사본, 외국인투자 신고서, 인허가증(필요사업만) 등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5. 사업자 통장개설

외국환은행에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됨에 따라 은행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수탁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INFORMATION

### 문의처

사업자등록 : 국세청 부가가치세 담당 126->2->2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 필요 서류

##### 사업자 통장개설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개설 대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주요세금

### 1.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열거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다.

### 2. 사업연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3. 신고기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4. 세율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60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60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억 7,460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42%)

☞ 소득세 납부 시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부과된다.



## 비자

외국인투자로서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무역경영(D-9) 사증과 대한민국 개인 기업에 투자(D-8-3) 사증 등이 있다.

### 1. 무역경영(D-9) 사증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억 원 이상 외국자본을 도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필요 서류

####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 ① 통합신청서 1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②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고위험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⑦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⑧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중에서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 ⑨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납세사실증명원(부가가치세, 소득세)  
- 세금계산서
- ⑩ 통장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 ⑪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 ⑫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⑬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2. 대한민국 개인 기업에 투자(D-8-3) 사증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기업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한다. 공동사업자인 한국인 대표의 사업자금 역시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 In Detail

#### 발급 요건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 일 것

### 필요 서류

####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 ① 통합신청서 1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②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 ③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 공동사업자 약정서 원본
- ⑦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 ⑧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⑨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 ⑩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 중에서
  - 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타발송금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 ⑪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⑫ 사업자 통장 및 통장 거래내역 사본
- ⑬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
  - 물품구매영수증
  - 사무실인테리어 비용 등
  - 국내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 ⑭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⑮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제국 서류(필요시 징구)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폐업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등을 통하여 잔여 재산을 본국으로 회수할 수 있다.

### 1. 인허가 말소

영위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인허가 말소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받았던 시·군·구·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다.

### 2.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에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한다.

### 4.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투자 잔여재산의 환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신고서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휴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 법제처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휴폐업신고서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담당(126→2→2)

#### 필요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말소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반납

⇒ 인베스트코리아 [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 → 정보센터 → 자료실 → 자료서식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 서류

##### 대외송금 시

외국인투자등록말소확인서 / 공인회계사감사필 청산보고서 /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시군구 발행) / 예금잔액증명서

\* 송금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부동산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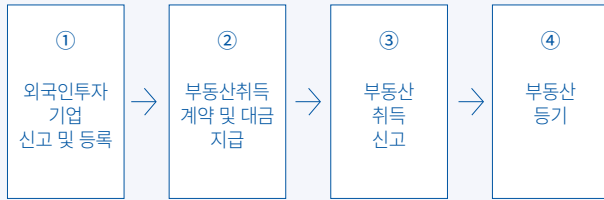
### 관련 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대상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내국 법인 외국정부, 국제경제 협력기구 등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외국영주권자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비거주자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신고: 비거주자가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취득할 경우
신고기관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외국환은행, KOTRA	외국환은행
신고시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투자자금 반입이전	부동산취득 자금 인출 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 1. 외국인투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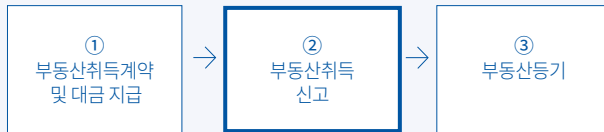
외국인투자기업이 영리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 ①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KOTRA에서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한다.
- ② 부동산 취득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③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④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구비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 2. 거주외국인 : 외국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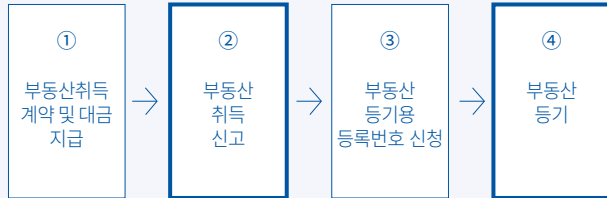


- ① 부동산취득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②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③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구비서류는 지점법인등기부등본(개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 3. 비거주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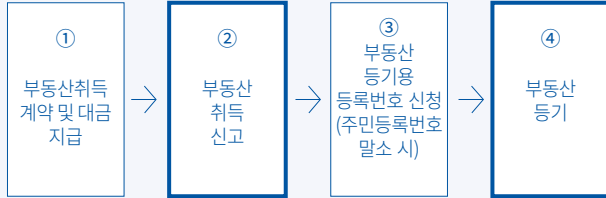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 ① 부동산취득계약을 체결한다.
- ② 부동산 관련 대금을 지불한다.
- ③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물권, 임차권)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서가 있어야 향후 부동산 처분대금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④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제출서류는 개인의 경우 토지취득신고필증과 여권사본, 법인의 경우 토지취득신고필증과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표자, 대표자 주소지 증명서류 등이 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구비서류는 지점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 4.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거주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이 적용된다.



- ① 부동산취득계약체결 후 대금을 지급한다.
- ②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는 부동산 취득계약서이다.
- ③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이다.
- ④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부동산 등기를 하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구비서류는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감인계약서 등), 등기관리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 주소지 증명서 :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 증명서

### 부동산매매대금 반출

####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의 감액, 배당금, 청산대금 항목으로만 송금 가능하다. 지점의 경우 영업수익 또는 청산대금으로 송금 가능하다.

#### 거주외국인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송금가능하나 국내 발생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 비거주외국인

취득 시 신고한 자료로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련세금

단계	세목	비고
취득	표준세율	취득가액의 4.0%(농지(3.0%)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2013.8.28. 취득분부터) : 1~3%
	취득세	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증설용 부동산 취득 등 :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li> <li>·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신축, 증축에 한함)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li> <li>·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선박·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합한 세율</li> </ul>
	감면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영위기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은 감면가능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가치세	· 건물 취득가액의 10%(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85 m <sup>2</sup> )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
보유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 0.1~0.4%(별장은 4%)</li> <li>· 건축물 : 0.25~0.5%(골프장, 고급오락장내 건물은 4%,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5년간 1.25%)</li> <li>·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0.2~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2~0.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07~0.2%(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0%)</li> </ul>
	감면	취득세 감면과 동일
	중과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시: 5년간 5배 중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2주택 이하 : 과세표준의 0.5~2.7%, 3주택이상 0.6~3.2%</li> <li>· 토지(종합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 종합합산 : 과세표준의 1.0~3.0% 별도합산 : 과세표준의 0.5~0.7%</li> </ul>
	기타 부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li> <li>·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li> </ul>
매각	개인	양도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기 자산 : 70%</li> <li>· 등기 후 1년 미만 50%(주택 등은 40%)</li> <li>· 등기 후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 등은 기본세율 : 6~38%)</li> <li>· 등기 후 2년 이상 : 6~42%( 초과 누진)</li> </ul>
	법인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차익은 영업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li> <li>· 주택(임대주택, 사용인 제공 사택 등 일부 제외)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10%, 미등기 시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li> </ul>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	건축물 양도가액의 10%(양수인으로부터 징수)



## 부동산중개수수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아래와 같으며,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다.

###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 서울특별시 기준

####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1천분의 5	80만 원
	2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 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1천분의 4	30만 원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 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	

#### 오피스텔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주택이외 : 토지, 상가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요율결정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결정	주택과 같음



### Q1.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이 있다. 대법원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Q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미보유)이 국내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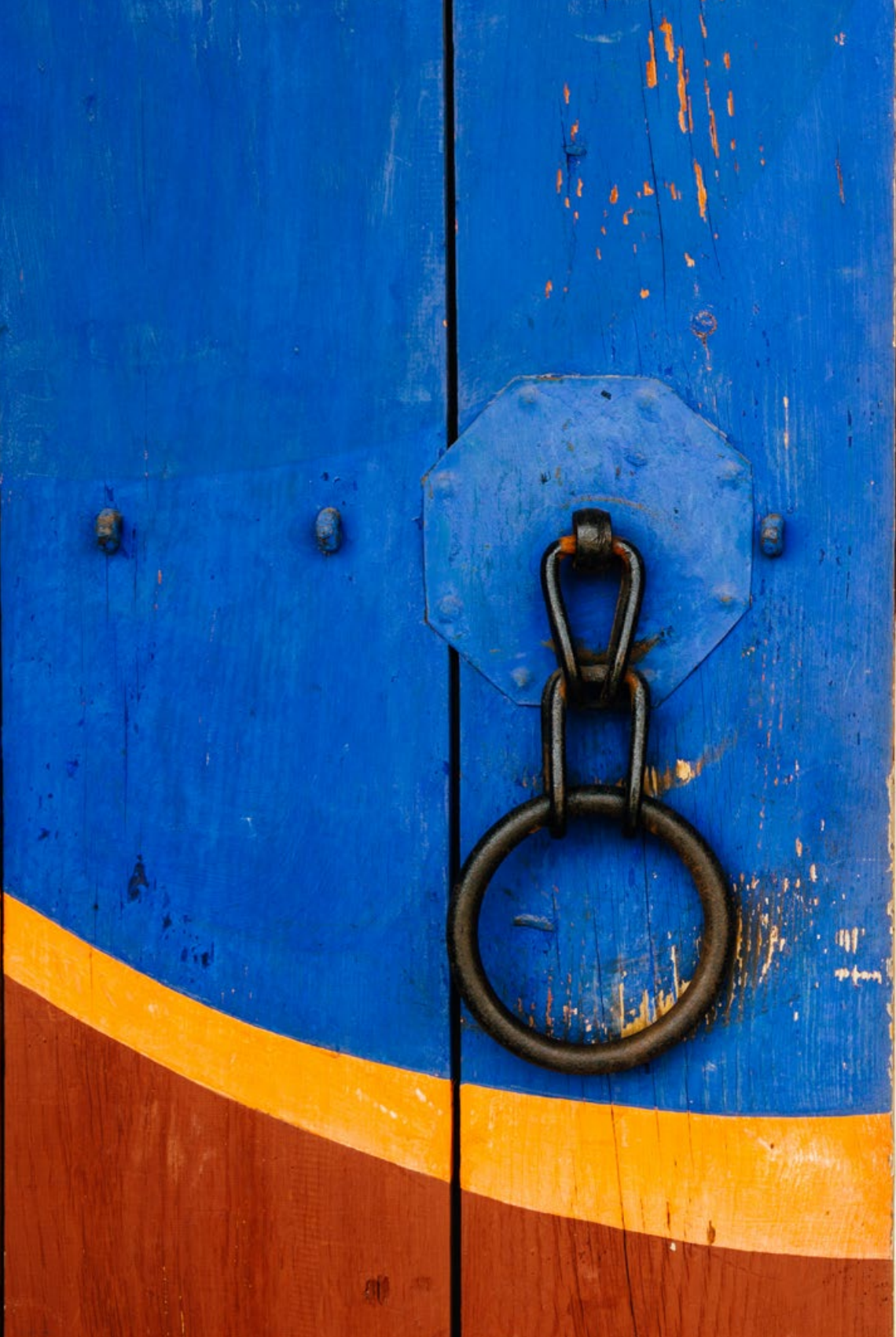
가능하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 Q3. 우리 회사는 외국인투자비율이 40%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난해 토지 10,000㎡를 취득하였지만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외국투자가가 한국파트너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외국인투자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다.

####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의 신분이 외국인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APPENDIX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61100	우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3	연금업	관련주무부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관련 주무부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행정안전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행정안전부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 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원	-
84402	검찰	법무부
84403	교도기관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법무부
84404	경찰	행정안전부
84405	소방서	행정안전부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부
85120	초등학교	교육부
85211	중학교	교육부
85212	일반 고등학교	교육부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301	전문대학	교육부
85302	대학교	교육부
85303	대학원	교육부
85410	특수학교	교육부
85630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가능	교육부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교육부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4110	산업 단체	관련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관련주무부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3	천주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4	민족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9	기타 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주무부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관련주무부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외교부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 기준	소관부처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35114	태양력 발전업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35130	전기 판매업	※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 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46313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해양수산부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수산부
51	국제항공 운송사업		
51	국내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 교통부
51	소형항공 운송사업		
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p>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60222	유선방송업	<p>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p>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10	유선통신업	<p>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약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단,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99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4121	국내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를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별표3] 입지별 특성

구분 (지정현황)	경제자유구역 (7개, 277km <sup>2</sup>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산단 7개, 물류6개, 30km <sup>2</sup> )
		단지형 (26개, 8.0km <sup>2</sup> )	개별형 (77개, 8.0km <sup>2</sup> )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절차	- 시도지사 요청 → 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장관 지정	- 시도지사 요청→위원회 심의→시도지사 지정		-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요청→위원회 심의→산업부장관 지정
입주자격	- 국내- 외투기업	- 외투기업 *외투비율 30% ↑, 1억 원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 첨단 제조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 외투기업& 업종별 최소 금액 ↑ 투자 (조세감면 요건과 동일) - 제조업: 3천만불 ↑ - 물류업: 1천만불 ↑ - 관광업: 2천만불 ↑ - R&D: 2백만불 ↑ & 연구원 10인 ↑ 고용	- 국내- 외투기업 *제조업: 수출액 50% ↑ *도매업: 수출입액 50% ↑ *물류업, 사업지원 업종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 제조업: 3천(1천)만불 ↑ - 물류업: 1천(5백)만불 ↑ - 관광업: 2천(1천)만불 ↑ - R&D: 2백(1백)만불 ↑ & 연구원 10인 ↑ 고용 - 의료기관: 5백만불 ↑ - 개발사업자: 3천만불 ↑	- 제조업: 1천만불 ↑ - 물류업: 5백만불 ↑	- 제조업: 3천만불 ↑ - 물류업: 1천만불 ↑ - 관광업: 2천만불 ↑ - R&D: 2백만불 ↑ & 연구원 10인 ↑ 고용	- 제조업: 1천만불 ↑ - 물류업: 5백만불 ↑
조세 감면				
지방세	-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비율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준과 동일(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 가능(취득세, 재산세 등)			
관세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7년형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개별형: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 면제
입지지원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50년, 50~100%)	- 국가 - 지자체 일괄매입(수도권: 40:60, 지방: 75:25) - 임대료 감면: (부지가액의 1%, 75~100%)		- 국가- 지자체 일괄매입 - 국유지: ~50년 임대(부지가액의 1%수준, 50%~100%감면)

연구개발특구 (5개, 139km <sup>2</sup> )	지역특구 (198개, 512km <sup>2</sup> )	산업단지		기업도시 (4개, 6.16km <sup>2</sup> )
		국가 (44개, 788km <sup>2</sup> )	일반 (650개, 542km <sup>2</sup> )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시도지사 요청→위원회 심의→과장부장관 지정	- 시군구 신청→위원회 심의의결→중기부장관 지정	- (행정기관장 요청→) 심의회 심의→ 국토부장관 지정	-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지정	- 사업시행자+시도지사 제안→위원회 심의→국토부장관 지정
- 국내-외투기업	- 국내 - 외투기업	- 국내 - 외투기업		- 국내 - 외투기업
- 국내 - 외투기업	- 국내 - 외투기업	- 국내 - 외투기업		- 국내 - 외투기업
-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		- 연구개발업 : 5억 ↑ & 10명 ↑ 고용 - 물류업 : 10억원 ↑ & 15명 ↑ 고용 - 제조업, 엔지니어링 등 : 20억 원 ↑ & 30명 ↑ 고용 - 개발사업자 : 5백억 원 ↑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7년간 100% 3년간 50%	-	- 취득세 : 50% 감면 - 재산세 : 5년간 75%(지방) / 35%(수도권)		-
-	-	-		-
- 국공유지: 부지가액 1% 수준 임대 (~50년)	-	-		- 국공유지: 임대(부지가액 1%) 및 임대료 감면 (~20%)

[별표3] 입지별 특성

구분 (지정현황)	경제자유구역 (7개, 277km <sup>2</sup>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산단 7개, 물류6개, 30km <sup>2</sup> )
		단지형 (26개, 8.0km <sup>2</sup> )	개별형 (77개, 8.0km <sup>2</sup> )	
	진입도로 간선도로, 공원,공동구 하폐수	국비 50% *위원회 심의의결 :100%가능	국비 75%(지방) / 40%(수도권) * 간선도로, 공원, 공동구 지원은 없음	-
국고 지원	용수시설	-	· 국가산단: 30% (지방) / 70%(수공) · 일반산단: 30만㎡이상 국비 100%	-
	기타	외국교육기관 자금지원	외국교육기관 자금지원: 기반시설 지원 기준과 동일	기술개발활동 등 자금지원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규제특례	<외투기업국한 특례 > 노동규제 완화: 의무고용, 무급휴가, 파견근로자 규제완화 2만불 ↓ 외국환거래 무신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외투기업국한 특례 > 노동규제 완화: 의무고용, 무급휴가, 파견근로자 규제완화 2만불 ↓ 외국환거래 무신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의무고용 배제	의무고용 배제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연구개발특구 (5개, 139k㎡)	지역특구 (198개, 512k㎡)	산업단지		기업도시 (4개, 6.16k㎡)
		국가 (44개, 788k㎡)	일반 (650개, 542k㎡)	
-	-	-	-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개발에 필요한 소요재원 지원
-	-	국비 50%		
-	-	국비 100%(수도권 제외)		
-	-	국비 50%		
기술사업화 지원, 외국인학교 지원	-		-	고용훈련비 우선지원
				외국교육기관(전문대이상)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유치
산단의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외국인진료병원 지정운영	59개 법률, 132개 규제특례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이양	주택특별공급: 건설량 50% (과밀억제권역 30% 내)  입주예정기업, 교육·연구기관 종사자		<외투기업국한 특례> 노동규제 완화 : 의무고용, 유급휴가, 파견근로자 규제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

[별표4] 지방세 세율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종과세율 : 2.8%, 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11%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 6~1천분의 42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1천분의 6~1천분의 42,		
	법인소득	1천분의 10~1천분의 70		
	특별징수	1천분의 10~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주민세	균등분 개인·법인	개인(10,000 원 이하), 법인(5~50 만 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1㎡당 250 원		
	종업원분 급여액 (50인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년 1cc당 80~200 원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 5천 원~ 6천 6백 만~ 11만 5천 원 15만 7천 5백 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05.21)	
담배소비세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20개비(1갑)당 1,007원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전통, 소싸움	발매금 총액의 1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발전용수 등	채수량 1㎡ 당 20 원, 발전용수 10㎡ 당 2 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50%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토지 종합 : 0.2, 0.3, 0.5% 별도 : 0.2, 0.3, 0.4% 분리 : 0.2%~4%	
		재산세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등록면허세	등록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 5천 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 원)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4천 5백 원 ~ 6만 7천 5백 원

[별표5] 수탁기관

수탁기관	부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055-290-8495	[513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경남은행,외환사업부)
광주은행	외환사업실	062-239-6555	[6147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외환사업실)
국민은행	외국고객부	02-2073-8954	[0453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5층 (국민은행,외국고객부)
기업은행	외국고객팀	02-2031-5630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을지로2가, IBK파이낸스타워)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외국고객팀)
농협은행	외환팀	02-2131-1611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4층(농협은행,외환팀)
뉴욕멜론은행	기업신탁부/업무부	02-6137-0360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번지 원아이에프씨 29층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053-740-2946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외환사업부)
도이치은행	자금관리업무부	02-724-4281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층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대고객부	02-6322-2661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8층 (디비에스은행)
미쓰이스 미토모은행	외환송금그룹	02-6364-7262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관 12층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GCBS팀	02-3782-8690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9층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바덴뷔르템 베르크주립은행	오퍼레이션	02-6730-0142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뱅크오브 아메리카(BOA)	법인지원부	02-788-1760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센터 27층(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661-4665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15층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비엔피(BNP) 파리바은행	송금대부계	02-317-1929	[0463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24층 (BNP파리바은행)
산업은행	무역금융실	02-787-7521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무역금융실)
소시에테제네랄 (SG)은행	자금관리부	02-2195-7820	[031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 23층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수협	글로벌외환사업부	02-2240-2605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수협은행, 국제금융실)

수탁기관	부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신한은행	외국인투자사업부	02-2151-2872	[04513]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9길 20 (신한은행,외국고객부)
아이앤지은행	업무부	02-317-1849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1층 (아이앤지은행)
아마구찌은행 부산지점	업무팀	051-462-3281	[4893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4층 (아마구찌은행)
엠유에프지은행	송금과	02-399-6413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7층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02-3789-1899	[06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2층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전북은행	외환업무팀	02-751-2489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 JB금융지주빌딩 3층
제이피모간 체이스	기업자금관리업무부	02-758-5232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5 제이피모간프라자(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제주은행	자금부	064-720-0267	[631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중국건설은행	운영부	02-6730-3611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4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영업부	02-3788-6617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중국공상은행)
중국광대은행	운영부	02-3788-3790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3층 (중국광대은행)
중국교통은행	회계영업부	02-2022-6837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교통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영업부	02-399-6699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1층 (중국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국내업무부	02-3700-9632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1층(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외환송금업무부	02-3702-3393	[031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금융운영센터)
한국씨티은행	중앙기업업무센터	02-3455-2676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한국씨티은행)
호주뉴질랜드 은행	오퍼레이션	02-3700-3143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2층(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 (HSBC)은행	업무부	02-2004-0100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은행)
KEB하나은행	외국인투자사업부	02-2002-2325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KEB하나은행,외국고객부)

[별표5] 법무법인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김·장 법률 사무소	정경택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950	이경윤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은행, 외국인투자, 해외법무, 사모투자, 방송·통신	+82-2-3703-1181
				김진오	영어	공정거래, 기업인수· 합병,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기업형사· 화이트칼라범죄, 사모투자, 국제분쟁, 유럽, 프랑스, 독일	+82-2-3703-1261
				김효상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건설·부동산 분쟁, 부동산·건설, 자산운용, 독일, 기업지배구조, 방송·통신	+82-2-3703-1409
				박상호		에너지·자원, 기업인수· 합병,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법무, 지식재산권	+82-2-3703-1747
				윤여민	영어 일본어	일본,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82-2-3703-1766
				박정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부동산· 건설, 인사·노동, 독일, 유럽	+82-2-3703-1153
				최원탁	영어 중국어	중국, 외국인투자, 기업인수·합병	+82-2-3703-1925
				전성훈		베트남대사관 번역공증인증 출입국, 행정, 비자업무 투자상담, 법인설립, 자문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82-2-725-3003
대호	석동현, 최수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6층	18	석동현	영어 중국어	비자 취득 등 출입국 관련자문	+82-2-568-5200
				신동욱	영어	자회사, 지사, JV 설립, 외환거래 규정 자문, 외투기업 세제혜택 등 세무 자문, 주식양수도 등 M&A 관련 자문, 경영지원 서비스, 외투기업 경영 자문	
				임동번	일본어		
동북아	김신호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5, 서관 416호	9	김신호	중국어	한중간의 상호투자, 기업 인수합병, 법률, 투자자문	+82-2-596-8111
				이경재	영어	법률, 투자자문	
				장윤석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번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랜드마크	김재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47, 21층	30	김재훈	영어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82-2-533-7979
				유형준			
				박효선			
				채준병	일본어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최우식	영어	기업법무, 조세, 민사, 형사, 노동	
				최원우			
				조훈희			
이소현	중국어	기업 인수·합병, 기업투자 중 기업법무, 조세					
안완진							
주건화							
(유) 로고스	양승국, 김재복, 김무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8,14,16층)	115	류두현	영어	해외사업, 합작투자	+82-2-2188-1014
				변윤석		외국인투자,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82-2-2188-1017
				이한나		국제거래, 해외사업, 국제중재	+82-2-2188-2836
				박정열	중국어	기업인수합병, 외국인투자, 해외사업	+82-2-2188-2837
				기문주		의료법, 노동법	+82-2-2188-1050
				임형민		회사법, 중국기업에 의한 국내 투자	+82-2-2188-1025
				한정애	일본어	회사법, 도산법, 일본기업의 국내 투자	+82-2-2188-2831
				임진석	영어, 일본어	기업, 금융, 국제분쟁, 중재	+82-2-3477-8500
				강인철	영어	기업, 금융, 중재, 국제분쟁	+82-2-3477-6300
				김학훈		M&A, Investment, PEF, 공정거래	+82-2-3477-8686
차선희	금융, HR, 국제분쟁	+82-2-3477-3003					
린	임진석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10층	44	박성준	영어	에너지, 인프라	+82-2-3477-3003
				이홍원		기업 투자, M&A, 금융	+82-2-3477-3003
				윤현상		M&A, Investment, PEF, 금융	+82-2-3477-8500
				Milosz Zurkowski	영어 폴란드어	Investment, 금융, 국제소송, 중재, 도산, HR	+82-2-3477-8500
				조만구	영어	투자, M&A, Project Financing	+82-2-3477-3003
				김용갑	일본어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82-2-3477-8686
				김종식		M&A, 공정거래, 부동산	+82-2-3477-8585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번호사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벼리	김인중, 이수정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1407호	4	이수정	영어 일본어	법인설립, 재무, 분쟁조정	+82-51-782-9226																																																		
				김지영	영어			비츠로	이찬승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86 신원빌딩 502호	4	송혜미	영어 일본어	지사설립 절차 대행, 계약서 검토, 기타 자문 및 소송 업무	+82-10-8277-2024	(유)산우	임정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허브원빌딩 7층	13	문하영	영어, 프랑스어	총괄	+82-2-584-5533	김하진	영어	법률자문, 국내 법인설립 대행, JV, 해외투자, 인수·합병, 국제중재	현수진		국제거래, 기업자문, JV	양현	김의재, 최성준, 김수창, 최경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25층	45	채연정	영어	법인, 지사, 합작법인 등 설립,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거래, M&A	+82-2-397-9840	최성현	비자 취득 등 출입국 관련 자문 및 기업법률 관련 자문	+82-2-397-9886	(유)원	강금실, 윤기원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	53	이광수	영어	기업법무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회생), 금융·증권 (증권발행·기업공개), 국제법무	+82-2-3019-2893	홍용호	국제법무 (국제법무일반,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국제 중재)	+82-2-3019-5453	박효준	기업자문 일반, M&A, 국제투자 및 거래, EPC 프로젝트, 국제소송	+82-2-3019-5455	천창현	기업법무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회생), 국제법무	+82-2-3019-2152
비츠로	이찬승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86 신원빌딩 502호	4	송혜미	영어 일본어	지사설립 절차 대행, 계약서 검토, 기타 자문 및 소송 업무	+82-10-8277-2024																																																		
(유)산우	임정혁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허브원빌딩 7층	13	문하영	영어, 프랑스어	총괄	+82-2-584-5533																																																		
				김하진	영어	법률자문, 국내 법인설립 대행, JV, 해외투자, 인수·합병, 국제중재																																																			
				현수진		국제거래, 기업자문, JV																																																			
양현	김의재, 최성준, 김수창, 최경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55, 25층	45	채연정	영어	법인, 지사, 합작법인 등 설립, 외국인투자신고, 외국환거래, M&A	+82-2-397-9840																																																		
				최성현		비자 취득 등 출입국 관련 자문 및 기업법률 관련 자문	+82-2-397-9886																																																		
(유)원	강금실, 윤기원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	53	이광수	영어	기업법무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회생), 금융·증권 (증권발행·기업공개), 국제법무	+82-2-3019-2893																																																		
						홍용호	국제법무 (국제법무일반,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국제 중재)	+82-2-3019-5453																																																	
				박효준		기업자문 일반, M&A, 국제투자 및 거래, EPC 프로젝트, 국제소송	+82-2-3019-5455																																																		
				천창현		기업법무 (기업의 인수·합병, 파산·회생), 국제법무	+82-2-3019-2152																																																		
				최현오		기업법무, 건설·부동산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증권 (구조화금융·파생상품), 국제법무	+82-2-3019-5453																																																		
				이영주		기업법무 (회사설립, 투자 자문, 계약서 검토), 국제법무	+82-2-3019-5455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유)올촌	윤용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364	Moritz Winkler	영어 독일어	해외, 유럽, 기업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 노동, 국제소송 및 중재, 자동차, 중남미/남유럽	+82-2-528-5483
				강수구	영어 베트남어	기업법무 및 금융, 은행·금융일반, 해외, 베트남/동남아시아	+82-2-528-5561
				김종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82-2-528-5043
				변용재	영어 중국어	기업법무 및 금융, 해외투자, 중국, 환경	+82-2-528-5797
				신동찬	영어	중동, 해외투자, 기업인수합병(M&A), 국제소송 및 중재,	+82-2-528-5356
				이수정	영어	노동	+82-2-528-5246
				이승목	영어	지적재산권, 부정거래,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특허/실용신안, IP Risk Management(IP compliance), 지적재산권 조사/평가,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거래, 해외 분쟁 매니지먼트	+82-2-528-5942
				이승민	영어 프랑스어	공정거래, 방송통신, 의료제약, 행정 분쟁, 건설부동산 분쟁, 환경·에너지	+82-2-528-5705
				이승범	영어 일본어	기업인수합병(M&A), 기업내부조사, 공정거래, 일본, 자동차	+82-2-528-5091
				이태혁	영어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해외투자(인도네시아 등), 금융일반, 펀드, PE	+82-2-528-5512
				이형근	영어	국제소송중재, 국제통상·무역제재, 해외투자	+82-2-528-5517
				이형기	영어 프랑스어	기업인수합병(M&A),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보험,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규제, 기업지배구조	+82-2-528-5885
				이홍배	영어 베트남어	해외투자, 베트남/동남아시아, 부동산 건설,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사업,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94-4-3837-8200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유)올촌	윤용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364	이화준	영어 러시아어	해외투자, 기업인수합병(M&A), 국제소송및중재, 환경에너지, 부동산, 러시아/CIS, 북한	+82-2-528-5519
				임민택	영어 아랍어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중동, 해외 부동산 개발 및 건설/플랜트 사업, 해외,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82-2-528-5406
				정세훈	영어	기업인수합병(M&A), 공정거래, 공정거래 분쟁, 방송통신, 의료계약	+82-2-528-5923
				조현철	영어 프랑스어	M&A, 해외투자, 프랑스, 럭셔리 산업	+82-2-528-5958
				최용환	영어 일본어	국제조세, 조세쟁송	+82-2-528-5709
				최충인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 문화산업, 펀드·PE,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환경/에너지, 부동산자문,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해외 분쟁	+82-2-528-5073
이공	허진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	5	강두웅	영어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및 법적위험관리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외환관련업무(신고, 허가등) -국내 및 해외 현지 법인설립	+82-2-2038-3620
				허진민		-국제거래 계약서 검토 및 법적위험관리 법률자문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양홍석		-국내 및 해외 현지 법인설립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이공	허진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	5	황영민	영어	-투자자문 및 인수합병 법률 검토 (M&A, Escrow, Funding Agreement, Due Diligence Report 등)	+82-2-2038-3620
				송지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외환관련업무(신고, 허가등)	
이후	이종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아주빌딩 20층	13	이종건	영어 중국어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인수합병(M&A), 국제거래,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82-10-7134-2198
				류권영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지적재산권, 저작권,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82-10-7143-0882
				백은성	영어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인수합병(M&A), 국제거래, 사모펀드 등 집합투자, 한중미 기업법무	+82-10-3271-7740
				권낙현		국내외기업의 법률실사, 지적재산권, 저작권, 국제거래, 인수합병(M&A)	+82-10-6530-5709
인화 국제	황주환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6, 은하빌딩 2층	3	황주환 이민주 이정민	영어	각종 민·형사송무, 계약, 투자자문	+82-51-503-0037
(유)지평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60 KT&G 서대문타워 10층	184	정철	영어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자원-에너지-인프라 / 중국 / 미얀마	+82-2-6200-1753
				류혜정	영어 러시아어	합작법인 설립을 포함한 M&A / 기업 일반-국제거래 / 자원-에너지-인프라 / 국제건설 / 공공계약	+82-2-6200-1722
				최정식	영어 중국어 일본어	M&A / 노동법 / 조세 / 중국 / 국제소송-국제중재	+82-2-6200-1785
				서준희	영어 일본어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제약-바이오-의료 / 엔터테인먼트-미디어-문화 / 미얀마	+82-2-6200-1763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유)지평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 로60 KT&G 서대문타워 10층	184	이훈		외국인투자 업무 (외투법인 설립, 지분투자, 합작회사 등) / 기업일반(노동 포함) / 에너지, 환경 / 국제분쟁	+82-2-6200-1851
				노충욱	영어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해외투자 / 금융·증권·사모펀드(PEF, HF) / 미국 / 인도 / 필리핀	+82-2-6200-1810
				이상희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지적재산권 / 국제건설 / 해외업무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82-2-6200-1793
				김옥림	영어 중국어 일본어	M&A / 기업일반-국제거래 / 중국	+82-2-6200-1718
케이 애플	김태진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B동 2901호	5	김태진	영어	법률자문, 민사, 형사, 외국인 투자 및 법인설립	+82-32-864-8300
타임	이형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7호	3	이형우	영어	계약 및 세금	+82-2-583-7203
(유)화우	정진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 층	420	나승복	중국어	중국, 한/중 투자, IPO, M&A, 해외투자, 일반 기업자문, 외국인투자, 사모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감독기관조사, 자본시장, 자산운용 등	+82-2-6003-7137
				김한철	러시아어	러시아-CIS, 유럽, M&A,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기업자문 등	+82-2-6003-7524
				차지훈	영어	해외투자/아웃바운드 M&A, 프로젝트파이낸스,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동남아시아	+82-2-6182-8373
				이승기	영어	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CIS, M&A, 기업 지배구조, 도산·기업회생, 해외투자, 금융, 금융분쟁, 감독기관조사,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방송·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북한 등	+82-2-6003-7519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번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유)화우	정진수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8, 19, 22, 23, 34 층	420	김권희		유럽, 동남아시아, 러시아-CIS, 일본, 중국,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국제무역통상, 일반기업자문, M&A, 구조화 금융,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82-2-6003-7566
				이준우		동남아시아, 한/베트남 투자, 재무, 조정, 일본, 중국, 러시아-CIS, 유럽, 금융, 사모투자,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프로젝트파이낸스,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일반기업자문 등	+82-2-6003-7527
				장황림		동남아시아, 자산운용, M&A, 금융, 사모투자, 외국인투자, 보험, 비은행금융회사,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 기업자문, 자본시장, 프로젝트파이낸스, 북한 등	+82-2-6003-7594
				정해왕	일본어	일본, 한/일 투자, JV, 상업소송, 해상, 항공, 일반기업자문 등	+82-2-6003-7567
				홍동오	영어	지식재산권, 일본,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M&A, 은행·금융지주회사, 일반 기업자문	+82-2-6003-7549
				김원형		일본, M&A, 일반기업자문, 외국인투자, 자본시장규제, 자산운용,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모투자, 보험 등	+82-2-6003-7531
				강성운		IPO, 중국, 금융, 사모투자, 자본시장규제, 외국인투자, 금융규제 및 법규준수, 항공, 동남아시아 등	+82-2-6003-7591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화이트 앤케이 스	홍지훈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31층	5	홍지훈		파이낸스, 구조화 금융	+82-2-6138-8816
				정원선		기업자문, 인수합병	+82-2-6138-8812
				박세라	영어	프로젝트 개발 및 파이낸스	+82-2-6138-8820
				정영희		기업 자문, 인수합병	+82-2-6138-8830
				전세별		상사 소송, 분쟁	+82-2-6138-8817
(유)한결	송두환, 이경우, 안병용, 안식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 빌딩 16층	60	이제혁	영어	해외투자 및 M&A, 금융, 국제소송 및 중재, 외국인투자	+82-2-3458-0980
				박형준		해외투자, 기업인수합병, 합작투자, 외국인투자	+82-2-3458-0906
				엄태진		해외투자 및 M&A, 미국 등 해외정부조달시장진출, 방산,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82-2-3458-0921
				정국철	중국어	외국법자문사(중국), 중국투자, 인수합병, 부동산투자, 지적재산권, 연예매니지먼트, 사모투자, 소송 및 중재	+82-2-3458-9401
				윤수인	영어 일본어	외국인투자, 기업인수합병, 기업일반, 국제거래, 국제소송 및 중재	+82-2-3458-0983
				윤상원	영어	해외투자 및 M&A, 금융, 합작투자, 외국인투자, 지적재산권	+82-2-3458-0947



[별표7] 회계법인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다산	김석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98길 23, 6층	56	안종남	영어	지사/법인설립, 급여서비스, 장부기장, 회계감사, 세무서비스	+82-2-531-7472
				송성용	일본어		+82-2-531-7458
대현	송재현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69-11 한진빌딩 502호	44	우필구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및 청산 대행, 기업회계(기장대리, 본사 재무보고), 자금 관리(경비 및 급여 대행 지급 등), HR 아웃소싱(급여, 4대보험), 세무 신고대행(부가세, 법인세) 및 세무 자문(기타 이전가격 조사 등 국제조세), M&A 자문	+82-2-558-8737
도원	임진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1, 5층	70	안섭	영어 일본어	연락사무소/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문,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관련자문(전략적 제휴 또는 M&A),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장부기장, 급여 신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조세특례 감면사업 신청대행, 회계감사	+82-2-3453-3695
동남	조경명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53 케이엘 넷빌딩 4,5층	23	윤성일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외투법인 설립, 장부기장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각종 세무신고 및 자문, HR Outsourcing(급여, 4대보험), 기장대리를 포함한 재무보고 패키지 작성, 자금관리(사무실경비, 급여지급대행포함), 국제조세관련자문 및 세무조사대행(고정사업장, 이전가격, 조세조약의 적용 등)	+82-2-501-0024
				윤상수	중국어		+82-2-557-7530 +82-10-2567-7530
				김대우	영어		+82-2-562-1152
리안	이상은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209, 8층	50	조의행	영어	- 국내 진출 전반에 관한 자문 - 외투법인, 지점, 연락 사무소 설립 및 자문 - 외투법인의 회계 시스템 구축 - 회계아웃소싱, HR 아웃소싱, 세무신고 - 회계자문 (K-GAAP, IFRS) - 세무자문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국제조세) - 세무신고 (법인세, 부가세 등)	+82-2-537-1807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마자르 새빛	박승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마자르새빛 회계법인	25	박승하	영어	Accounting & Tax	+82-2-3438-2406
				허영			+82-2-3438-2403
				줄리앙 에르보	영어, 프랑스어	Audit, FAS	+82-2-3438-2431
				이정민	영어	Audit	+82-2-3438-2441
				심규택			+82-2-343-2442
				램버트 보아빈			영어, 프랑스어
				심지원	일본어		+82-2-3438-2563
보명	이창열	부산 사상구 사상로 123, 5층	12	이창열	영어	회계감사, 내부감사, 재무실사, M&A자문	+82-51-328-9328
삼덕	이용모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S&S 빌딩	441	최권정	영어	-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고정사업장 설립/신고 지원 - 급여 서비스 - 회계장부 및 재무패키지 작성 -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 - M&A, 배당 등 세무 및 회계 자문 - 사무지원서비스	+82-2-397-6602
				하정훈		회계감사, 가치평가, 재무실사, 재무패키지 작성	+82-2-397-6602
삼일	김영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AP빌딩	2133	강찬영	영어	Inbound audit 및 국내진출 자문	+82-2-709-4788
				Daniel Fertig			+82-2-709-8714
				전용욱	영어 중국어	중국인 국내진출 자문 및 audit	+82-2-709-7982
				안익흥	영어	세무	+82-2-3781-2594
				박대준		M&A / Valuation	+82-2-709-8938
				이회림		실사, Valuation, Outbound/ Inbound M&A	+82-2-709-0786
				이상은			+82-2-709-6489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성도 이현	박근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9층	85	이민재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검토), 회계감사, 재무실사, 외국인투자지역신청, 고도기술사업신청대행 등	+82-2-513-0208
				박영아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설립대행 및 자문, 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대리), 세무신고대행(법인세, 부가세등),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82-2-513-0278
				고태일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설립대행 및 자문, 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장대리), 세무신고대행(법인세, 부가세등), 세무자문(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검토), 회계감사, 재무실사	+82-51-460-4723
				김혜윤	영어	HR아웃소싱(급여), 기업회계(기 장대리), 세무신고대행(법인세, 부가세등), 회계감사 및 재무실 사 등	+82-51-460-4710
신화	김성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6 길15, 8/9층	25	양윤기	영어	M&A자문, 재무실사, 기타자문	+82-2-561-7181
				김광수	일본어	법인설립, 기장, 세무자문, 회계감사	+82-2-553-7956
				장태일		M&A자문, 재무실사, 기타자문	+82-2-555-9211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안진	이정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 금융센터 One IFC 9층	959	윤경일	영어	감사, 회계자문, 금융기관 재무실사 및 M&A 자문, 회사설립 및 인허가 등	+82-2-6676-1149
				허호영		감사, 회계자문, 금융기관 재무실사 및 M&A 자문 등	+82-2-6676-1180
				조태진		감사, 회계자문, 금융기관 재무실사 및 M&A 자문 등	+82-2-6676-3322
				박성호		내부통제제도(SOX) 검토 및 구축 자문, US GAAP 및 IFRS 자문, 재무실사	+82-2-6676-3160
				황재호		M&A 자문, 재무실사, 기타 재무자문 회계감사(외국투자기업전문), 해외펀드 투자실사 전문, 재무관련 규정 및 기타 자문	+82-2-6676-3129
				유지훈		M&A 자문, 재무실사, 기타 재무자문 회계감사(외국투자기업전문), 해외펀드 투자실사 전문, 재무관련 규정 및 기타 자문	+82-2-6676-3124
				이동현		US GAAP,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기타 재무자문	+82-2-6676-3125
				김영재		회계감사, 재무실사	+82-2-6676-1689
				전용석		M&A 자문, 재무실사	+82-2-6676-1524
				서정욱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82-2-6676-1871
				나기영		회계감사(IFRS, K-GAAP), M&A 자문, 기타 재무자문, 내부통제 관련 자문,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82-2-6676-1530
				황승희		재무실사, 국내진출 자문 전반에 대한 coordinating	+82-2-6676-1642
				유병문		US GAAP 및 IFRS 감사 및 자문, 재무실사, 내부통제 및 SOX 관련 회계 자문	+82-2-6676-1546
김기현	감사, 회계자문, 재무실사(금융기관 제외) 및 M&A 자문	+82-2-6676-1397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오성	남시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9층	18	이석형	영어 중국어	외국인투자자문총괄, 회계감사, M&A자문, 재무실사, 세무자문	+82-2-2631-1230
				위영	외국인투자상담, 외국인투자법인 (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설립자문, 외투법률서비스, 세무자문, 외국인스타트업자문		
				박영련	중국어	외국인(중국)투자(법인설립), 투자신고, 외국기업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세무신고 및 기업회계(기장대리)	
				오카자키유키	일본어	외국인(미주, 유럽)투자(법인설립), 투자신고, 외국기업지사 및 연락사무소설치, 세무신고 및 기업회계(기장대리)	
				Jason Song	영어	외국인(동남아)투자, 투자신고, 외국기업지사 및 연락사무소설치, 세무신고 및 기업회계(기장대리)	
				김미숙	영어	세무신고대행(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근로소득원천세신고), 기업회계(기장대리), 4대보험관리, 본사재무보고패키지 작성	
				최윤영			
				김건태			
				서준원			
				박주현			
이순원							
워드	이영석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13층	29	강성규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외국인 투자법인 신고, 설립 및 청산, 기업회계 기장, 본사 재무보고, 급여 및 4대보험 대행, 세무신고 대행, 국제조세 및 M&A 자문, 회계감사, 기타 자문	+82-2-2043-2747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번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이촌	정석용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16	유성일	영어 중국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문, Booking 및 세무신고대행(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원천세 등), 국제조세자문, 회계감사, M&A실사 및 자문, 일반세무 및 재무 자문	+82-2-780-0889
				박승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FDI), 세무자문, 세무신고, 아웃소싱 서비스, 부동산투자자문, 각종등기절차대행, 그룹보고서패키지 작성, 재무실사 및 기타 재무자문, 회계감사, 내부감사	+82-2-3775-0065
				정성문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대행 및 자 문, 세무자문(조세감면 등, 법인세제 관련 자문), 세무신고대행(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근 로소득원천세 신고대행), 기업회계(기장대리)	+82-2-6617-7210
				서관수		회계감사, 세무자문 및 세무조정, 외국투자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포함) 설립 자문, 외투 법률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	+82-51-715-0100
인덕	김광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3층	29	오윤택	영어	구조조정 및 청산 (연락사무소, 지사, 자회사), 외환거래 규정 컴플라이언스 및 자문, 회계, 기장대행, 원천징수세, 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신고 자문, 사회보장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및 자문, 자금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국제거래, 국내거래, 세무조사 지원 관련 자문, 조세불복	+82-2-761-3821
				문점식	영어	세무 및 회계 자문, 급여, 법인세 신고, 조세불복, 법인설립, 아웃소싱 서비스, 외부감사	+82-10-3898-2035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제원	박문식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28	김상윤	일본어	회사설립,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회계 및 세무위탁업무, 회계감사, 세무조사 대응, 급여 및 4대보험 업무, 기타 회계세무 종합자문, 재무실사 및 기타 재무자문	+82-2-511-1402
				최병호	영어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 안내, M&A자문, 재무실사, 회계감사, 부기대행, 세무대리	+82-2-512-0164
지성	이의웅, 이희수	서울시 강남대로 334 (에셋타워 8층)	26	신명철	영어	- 가장 적합한 entity(liasion office, branch office, subsidiary)의 형태 자문 - 투자자금의 규모, 방식(loan, capital) 자문 - 설립 대행 및 자문 - 설립 후 운영 시 회계/ 세무서비스 - Outsourcing finance manager 서비스 - 외국환거래법 자문	+82-10-8242-3945
진일	배영석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1 일신빌딩 701호	55	이대진	영어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대행 및 자문, 기업회계(기장대리, 그룹보고 패키지 작성 대행), 세무자문	+82-2-6095-2137
				최영윤			
태성	남상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6-2 케이큐브 빌딩 5층	100	김민정	영어	자회사 및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대행 외국인투자 기업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 외국인투자기업 감사 및 경영컨설팅	+82-2-561-6513
				정하준		M&A 자문, 재무실사	+82-2-561-0994

법인명	대표명	주소	소속 변호사 수	업무별 담당자	가능 언어	담당 업무	연락처
한영	서진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1033	김지훈	영어	회계감사	+82-2-3787-6745
				신금철			+82-2-3787-6372
				신훈식			+82-2-3787-6884
				김홍식			+82-2-3787-6810
				우승엽	일본어	세무자문, 세무신고 대행(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신고,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대행), 기업회계(기장대리)	+82-2-3787-6508
				신장규		+82-2-3770-0954	
				우승백	영어 독일본어	일반세무자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관련 자문	+82-2-3787-6320
한울	남기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8 길 14, 신도빌딩 6층	174	남기봉	영어	인증 실사 자문, 세무 기장 자문	+82-2-2009-5762
				강정대			+82-2-2009-5701
				이준우		회계감사, 재무실사, 가치평가, 기장(세무) 대리	+82-2-2084-5811
				고현철	영어 중국어	회계감사, 기장(세무) 대리, 기타자문 등	+82-2-2084-5860
				김성휘		현지법인설립, 기장, 세무대리	+82-10-8305-0490
				윤형근			+82-2-2084-5825
				권일규	중국어		+82-2-2009-5784
				홍영지	인증 실사 자문, 세무 기장 자문		+82-2-316-6639
				심지수		+82-2-316-6622	
				위상영	영어		+82-2-316-6621
				박상현			+82-2-316-6638
UHY 세일원	문길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1 화인강남 빌딩 6층	47	문길모	영어	외투법인 설립 및 청산 대행, 외국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대행, 외투법인 등에 대한 기장 및 본사 보고 대행, HR아웃소싱, 세무신고 대행(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및 절세방안 연구, 세무조사 대행(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및 조세조약 검토), 외국인투자유치 및 관련 자문, M&A 자문	+82-2-564-0026
				한중희			+82-10-5265-9460
				장인인	중국어		



## 외국인투자가이드 2020

---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주 소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
전 화	1600-7119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a href="http://www.investkorea.org">www.investkorea.org</a>
ISBN	979-11-6490-261-3(93320) 979-11-6490-262-0(9520)(PDF)

### 제 작

---

콘텐츠	KOTRA 투자종합상담실 태성희계법인 02. 561. 6513
디자인	빈커뮤니케이션즈 02. 3141. 3648



**AFGHANISTAN**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ALBANIA** REPUBLIC OF ALBANIA **ALGERIA**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ANDORRA** PRINCIPALITY OF ANDORRA **ANGOLA** REPUBLIC OF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GENTINE REPUBLIC **ARMENIA** REPUBLIC OF ARMENIA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IA**  
 REPUBLIC OF AUSTRIA **AZERBAIJAN** REPUBLIC OF AZERBAIJAN **BAHAMAS, THE** COMMONWEALTH OF THE BAHAMAS  
**BAHRAIN** KINGDOM OF BAHRAIN **BANGLADESH**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BARBADOS** **BELARUS** REPUBLIC OF  
 BELARUS **BELGIUM** KINGDOM OF BELGIUM **BELIZE** **BENIN** REPUBLIC OF BENIN **BHUTAN** KINGDOM OF BHUTA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REPUBLIC OF BOTSWANA **BRAZIL**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BRUNEI** NATION OF BRUNEI, THE ABODE OF PEACE **BULGARIA** REPUBLIC OF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REPUBLIC OF BURUNDI **CAMBODIA** KINGDOM OF CAMBODIA **CAMEROON** REPUBLIC OF CAMEROON **CANADA**  
**CAPE VERDE** REPUBLIC OF CABO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REPUBLIC OF CHAD **CHILE** REPUBLIC OF  
 CHILE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COLOMBIA** REPUBLIC OF COLOMBIA **COMOROS** UNION OF THE COMOROS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STA RICA** REPUBLIC OF COSTA RICA **CROATIA** REPUBLIC OF CROATIA **CUBA**  
 REPUBLIC OF CUBA **CYPRUS** REPUBLIC OF CYPRUS **DJIBOUTI** REPUBLIC OF DJIBOUTI **CZECH REPUBLIC** **DENMARK**  
 KINGDOM OF DENMARK **DOMINICA** COMMONWEALTH OF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AST TIMOR**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ECUADOR** REPUBLIC OF ECUADOR **EGYPT** ARAB REPUBLIC OF EGYPT **EL SALVADOR** REPUBLIC  
 OF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REPUBLIC OF EQUATORIAL GUINEA **ERITREA** STATE OF ERITREA **ESTONIA** REPUBLIC  
 OF ESTONIA **ESWATINI** KINGDOM OF ESWATINI **ETHIOPIA**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IJI** REPUBLIC OF  
 FIJI **FINLAND** REPUBLIC OF FINLAND **FRANCE** FRENCH REPUBLIC **GABON** GABONESE REPUBLIC **GAMBIA, THE** REPUBLIC OF  
 THE GAMBIA **GEORGIA** **GERMANY**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HANA** REPUBLIC OF GHANA **GREECE** HELLENIC  
 REPUBLIC **GRENADA** **GUATEMALA** REPUBLIC OF GUATEMALA **GUINEA** REPUBLIC OF GUINEA **GUINEA-BISSAU** REPUBLIC OF  
 GUINEA-BISSAU **GUYANA**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HAITI** REPUBLIC OF HAITI **HONDURAS** REPUBLIC OF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REPUBLIC OF INDIA **INDONESIA** REPUBLIC OF INDONESIA **IRAN** ISLAMIC REPUBLIC OF IRAN  
**IRAQ** REPUBLIC OF IRAQ **IRELAND** **ISRAEL** STATE OF ISRAEL **ITALY** ITALIAN REPUBLIC **IVORY COAST** REPUBLIC OF CÔTE  
 D'IVOIRE **JAMAICA** **JAPAN** **JORDA**  
 REPUBLIC OF JORDAN **KIRIBATI** REPI  
**SOUTH** REPUBLIC OF KOREA **KUWA**  
 REPUBLIC **LATVIA** REPUBLIC OF LAT  
 VIC OF LIBERIA **LIBYA** STATE OF LIBY  
 NIA **LUXEMBOURG** GRAND DUCHY  
 MALAWI **MALAYSIA** **MALDIVES** REI  
**ISLANDS**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MAURITANIA**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MAURITIUS** REPUBLIC OF  
 MAURITIUS **MEXICO** UNITED MEXICAN STATES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MOLDOVA** REPUBLIC OF MOLDOVA  
**MONACO** PRINCIPALITY OF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KINGDOM OF MOROCCO **MOZAMBIQUE**  
 REPUBLIC OF MOZAMBIQUE **MYANMAR**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NAMIBIA** REPUBLIC OF NAMIBIA **NAURU**  
 REPUBLIC OF NAURU **NEPAL**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NETHERLANDS** KINGDOM OF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REPUBLIC OF NICARAGUA **NIGER** REPUBLIC OF NIGER **NIGERIA** FEDERAL REPUBLIC OF NIGERIA  
**NORTH MACEDONIA** REPUBLIC OF NORTH MACEDONIA **NORWAY** KINGDOM OF NORWAY **OMAN** SULTANATE OF OMAN **PAKI-**  
**STAN**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PALAU** REPUBLIC OF PALAU **PALESTINE** STATE OF PALESTINE **PANAMA** REPUBLIC OF  
 PANAMA **PAPUA NEW GUINEA**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PARAGUAY** REPUBLIC OF PARAGUAY **PERU**  
 REPUBLIC OF PERU **PHILIPPINES**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POLAND **PORTUGAL** PORTUGUESE  
 REPUBLIC **QATAR** STATE OF QATAR **ROMANIA** **RUSSIA** RUSSIAN FEDERATION **RWANDA** REPUBLIC OF RWANDA **SAINT KITTS**  
**AND NEVIS** FEDERATION OF SAINT CHRISTOPHER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INDEPENDENT STATE OF SAMOA **SAN MARINO** REPUBLIC OF SAN MARINO **SÃO TOMÉ AND PRÍNCIPE** DEMOCRATIC REPUBLIC  
 OF SÃO TOMÉ AND PRÍNCIPE **SAUDI ARABIA** KINGDOM OF SAUDI ARABIA **SENEGAL** REPUBLIC OF SENEGAL **SERBIA** REPUBLIC  
 OF SERBIA **SEYCHELLES** REPUBLIC OF SEYCHELLES **SIERRA LEONE** REPUBLIC OF SIERRA LEONE **SINGAPORE** REPUBLIC OF  
 SINGAPORE **SLOVAKIA** SLOVAK REPUBLIC **SLOVENIA** REPUBLIC OF SLOVENIA **SOLOMON ISLANDS** **SOMALIA** FEDERAL  
 REPUBLIC OF SOMALIA **SOUTH AFRICA** REPUBLIC OF SOUTH AFRICA **SOUTH SUDAN** REPUBLIC OF SOUTH SUDAN **SPAIN**  
 KINGDOM OF SPAIN **SRI LANKA**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SUDAN** REPUBLIC OF THE SUDAN **SURINA-**  
**ME** REPUBLIC OF SURINAME **SWEDEN** KINGDOM OF SWEDEN **SWITZERLAND** SWISS CONFEDERATION **SYRI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REPUBLIC OF TAJIKISTAN **TANZANI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THAILAND** KINGDOM OF  
 THAILAND **TOGO** TOGOLESE REPUBLIC **TONGA** KINGDOM OF TONGA **TRINIDAD AND TOBAGO**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TUNISIA** REPUBLIC OF TUNISIA **TURKEY** REPUBLIC OF TURKEY **TURKMENISTAN** REPUBLIC OF TURKMENISTAN  
**TUVALU** **UGANDA** REPUBLIC OF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ST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UZBEKISTAN** REPUBLIC OF UZBEKISTAN **VANUATU** REPUBLIC OF VANUATU **979-11-6490-261-3(93320)**

www.kotra.or.kr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 T 1600 711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